

#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김 정 호    연 구 위 원  
이 성 호    책임연구원  
박 문 호    책임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24 / 1997. 9



빈

면

## 머 리 말

정부는 농업의 당면과제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구조개선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4년까지 12만호의 전업농과 함께 개별농가의 조직체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육성하여, 이들 전문경영체로 하여금 농업생산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농업법인 제도는 영농의 규모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농업에 기업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선진된 농업경영을 실현하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현재까지 설립된 농업법인은 모두 5천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농업법인은 빠른 기간 동안에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경영부실화가 우려되는 등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농업법인 정책이 아직 초기단계라는 측면도 있지만, 법인경영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되는 바 크다. 특히 협업화·법인화를 통해 경영상의 유리성을 추구하기 보다 단지 정책사업의 수혜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법인정책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농업법인이 우리 농정사상 처음 시도되는 새로운 경영주체라는 점에서 가족농과는 다른 차원에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농업법인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건전한 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제도 및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를 위하여 관련자료를 협조해 주신 농림부 농촌인력과 관계관 및 농업법인 대표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보고서가 앞으로 수립·추진되는 농업법인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1997.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박 상 우

빈

면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3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 3

## 제2장 농업법인 제도와 정책의 추진경과

1. 농업법인 제도의 변화 ..... 5
2. 농업법인 지원정책의 변화 ..... 13
3. 다른 법률 및 정책과의 관계 ..... 15

## 제3장 농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개황

1. 전수조사 결과 ..... 18
2. 표본조사 결과 ..... 28

## 제4장 농업법인 운영의 사례분석

1. 법인의 구성과 조직 ..... 33
2. 출자 및 자산운영 ..... 37
3. 사업 운영과 경영수지 ..... 39
4. 지역농업과의 관계 ..... 46
5. 법인경영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 50

## 제5장 외국의 농업법인 제도와 시사점

1. 일본의 농업법인 제도 ..... 53
2. 프랑스의 농업법인 제도 ..... 61
3. 외국 사례에 의한 시사점 ..... 64

## 제6장 농업법인 정책의 개선방안

|                               |    |
|-------------------------------|----|
| 1. 농업법인 제도와 정책과제 .....        | 66 |
| 2. 농업법인 정책개선의 당면과제 .....      | 72 |
| 부록. 농업법인 정책개선에 관한 의견조사표 ..... | 84 |
| 참 고 문 헌 .....                 | 89 |

## 표 목 차

### 제2장

|       |                           |    |
|-------|---------------------------|----|
| 표 2-1 | 영농조합법인 제도의 변화 내용 .....    | 8  |
| 표 2-2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점 ..... | 9  |
| 표 2-3 | 회사법인의 종류별 특성 .....        | 10 |
| 표 2-4 | 정책지원 사업의 자격요건 .....       | 14 |
| 표 2-5 |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 현황 .....    | 16 |

### 제3장

|        |                            |    |
|--------|----------------------------|----|
| 표 3-1  | 농업법인의 연도별 설립 동향 .....      | 19 |
| 표 3-2  |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별 설립동향 .....   | 19 |
| 표 3-3  | 영농조합법인의 사업형태별 설립동향 .....   | 19 |
| 표 3-4  | 농업회사법인의 사업형태별 설립동향 .....   | 20 |
| 표 3-5  | 농업법인의 사업형태별 설립현황 .....     | 20 |
| 표 3-6  | 농업법인의 시도별 설립현황 .....       | 20 |
| 표 3-7  | 농업법인의 사업형태별 평균 출자자 수 ..... | 21 |
| 표 3-8  | 농업법인의 출자자 변동 현황 .....      | 21 |
| 표 3-9  | 농업법인의 평균 출자금 현황 .....      | 22 |
| 표 3-10 | 농업법인의 연도별 정책지원금액 .....     | 22 |
| 표 3-11 | 농업법인에 대한 사업별 정부지원액 .....   | 23 |
| 표 3-12 | 농업법인의 평균 부채규모 .....        | 24 |
| 표 3-13 |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상태 .....         | 25 |
| 표 3-14 | 농업회사법인의 운영상태 .....         | 25 |
| 표 3-15 | 운영중인 농업법인의 경영수지 .....      | 26 |
| 표 3-16 | 영농조합법인의 수익규모별 분포 .....     | 26 |
| 표 3-17 | 농업회사법인의 수익규모별 분포 .....     | 27 |

|        |                           |    |
|--------|---------------------------|----|
| 표 3-18 | 법인 설립의 목적 .....           | 28 |
| 표 3-19 | 설립 목적이 달성된 정도 .....       | 28 |
| 표 3-20 | 법인경영과 개별농가와와의 관계 .....    | 29 |
| 표 3-21 | 법인설립 후 출자농가들이 얻는 이익 ..... | 29 |
| 표 3-22 |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         | 30 |
| 표 3-23 | 사업상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     | 30 |
| 표 3-24 | 법인의 독립된 사무실 유무 .....      | 30 |
| 표 3-25 | 경영기록의 유지 .....            | 31 |
| 표 3-26 | 향후 법인의 운영 계획 .....        | 31 |
| 표 3-27 | 법인 발전에 제약이 되는 요인 .....    | 31 |
| 표 3-28 | 정책자금의 상환 능력 .....         | 32 |
| 표 3-29 | 농업법인의 발전 방향 .....         | 32 |

#### 제4장

|        |                            |    |
|--------|----------------------------|----|
| 표 4-1  | 조사법인의 유형과 사업내용 .....       | 34 |
| 표 4-2  | 조합원(출자자)의 성격 .....         | 34 |
| 표 4-3  | 조합원(출자자) 선정시 착안점 .....     | 35 |
| 표 4-3  | 준조합원의 활용사례 .....           | 36 |
| 표 4-4  | 사업유형별 평균 출자내역 .....        | 37 |
| 표 4-5  | 정부지원 수혜실적 .....            | 38 |
| 표 4-6  | 사례법인의 경영안정성 지표 .....       | 39 |
| 표 4-7  | 판매실적 및 판매처별 평균비중 .....     | 41 |
| 표 4-8  | 조사법인의 거래방법별 판매비중 .....     | 41 |
| 표 4-9  | 농업회사법인의 수입원 구성 .....       | 41 |
| 표 4-10 | 영농조합법인의 수익성 변화 .....       | 42 |
| 표 4-11 | 농업회사법인의 수익성 변화 .....       | 43 |
| 표 4-12 | 경영관리 수법의 실천상황 .....        | 44 |
| 표 4-13 | 지역농협의 사업별 이용현황 및 만족도 ..... | 46 |

|        |                          |    |
|--------|--------------------------|----|
| 표 4-14 | 지역주민과의 협력 활동수행 .....     | 47 |
| 표 4-15 | 무안군 영농조합연합회의 법인 구성 ..... | 48 |
| 표 4-17 | 사업성공을 위한 우선순위 .....      | 51 |
| 표 4-18 | 실패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      | 51 |
| 표 4-19 | 사업성공의 요인 .....           | 52 |

## 제5장

|       |                         |    |
|-------|-------------------------|----|
| 표 5-1 | 일본의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지원 ..... | 56 |
| 표 5-2 | 일본의 농업생산법인 변화 추이 .....  | 57 |
| 표 5-3 | 프랑스 농업법인 현황 .....       | 63 |

## 제6장

|        |                              |    |
|--------|------------------------------|----|
| 표 6-1  | 개인경영과 법인경영의 특성 비교 .....      | 68 |
| 표 6-2  | 농림사업 지원방식의 개편방안 .....        | 70 |
| 표 6-3  | 법인이 과열설립되는데 대한 견해 .....      | 73 |
| 표 6-4  | 과열설립이 정부 보조금 때문이라는 의견 .....  | 73 |
| 표 6-5  | 법인 설립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      | 74 |
| 표 6-6  | 현재의 정책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한 견해 ..... | 74 |
| 표 6-7  | 법인경영이 부실화되는 이유 .....         | 77 |
| 표 6-8  | 부실화된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    | 77 |
| 표 6-9  | 영세법인 통폐합의 필요성 .....          | 78 |
| 표 6-10 | 기업 및 협동조합 합병제도의 내용 .....     | 79 |
| 표 6-11 | 법인과 농협과의 경합 실태 .....         | 80 |
| 표 6-12 | 성공적인 농업법인이 되기 위한 요건 .....    | 82 |

## 그 립 목 차

### 제2장

|        |                            |    |
|--------|----------------------------|----|
| 그림 2-1 | 우리나라 농업경영 주체의 제도적 지위 ..... | 7  |
| 그림 2-2 |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          | 12 |
| 그림 2-3 |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          | 12 |

### 제5장

|        |                   |    |
|--------|-------------------|----|
| 그림 5-1 | 일본의 농업법인 형태 ..... | 54 |
|--------|-------------------|----|

## 제 1 장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 농업의 당면과제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경영 주체가 육성되어야 하며, 특히 기존의 영세소농 구조를 개편하여 규모화·전문화된 농업구조를 실현해야 함. 이를 위하여 정부는 1992년부터 농업구조개선사업을 본격화하였고, 특히 평균적·분산적 지원체제에서 기술·경영능력을 갖추고 규모화를 지향하는 전문경영체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였음.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 1990년에 발족한 농업법인 제도는 1993년 「신농정」에서 새로운 농업경영 주체(新主體)의 육성을 표방하면서, 기존의 전업농 육성과 함께 농업구조정책의 핵심적인 과제로 자리잡고 있음. 이러한 정책적 배려에 힘입어 1996년말까지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95년 6월부터 농업회사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됨)는 총 4,906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 이렇게 최근 5년 사이에 농업법인은 양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며, 관련제도나 정책의 현장 적용면에서도 몇가지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시점에서 정책적으로 농업법인이 문제시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법인 설립의 과열 현상 : 영농조합법인의 자율설립 제도(회사법인은 상법 규정, 전문조합은 농협 감독) 하에서 '94년부터 생산자단체의 성격이 부여되고 정책지원이 확대되면서 보조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설립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단위의 정책사업 유치를 위해 개인사업을 공동명의로 추진하는 유명무실한 사례도 나타남.
  - 법인경영의 부실화 우려 : 주로 정책지원사업을 기대하고 설립한 법인은 부실화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심하며, 본래 목적인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도 경영의식이나 사업능력 부족 및 자본 제약으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농업법인의 성격 변질 : 농업법인은 개별농가의 협업을 토대로 농업경영의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이지만, 현실적으로 농업생산 보다는 유통사업에 치중함으로써 기존의 농협 조직과 경쟁적인 관계를 가지게 됨.
- 이와 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농업법인 정책이 아직 초기단계라는 측면도 있지만, 제도 발족당시부터 정책적 위상이나 육성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하고 정책수단에 있어서도 혼선을 빚어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음. 특히 '94년부터 농업법인을 생산자단체로 규정하고 정책지원사업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법인경영 내부에서도 협업화·법인화의 유리성을 찾기 보다는 단지 정부지원사업의 수혜를 위한 수단으로 왜곡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 농업법인은 우리 농정사상 처음 시도되는 법인경영체이기 때문에 가족농과는 다른 차원에서 농업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더욱이 정책

사업의 수혜자로서 경영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건전하게 육성되어야 함. 따라서 현단계에서 농업법인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재정비하여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현재 설립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건전한 법인경영체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따라서 개별 농업법인의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관련 제도와 시책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는데 주된 목적을 둠.

##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의 변화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농업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제도와 정책
  - 다른 법률 및 정책과의 관계
- 농업법인의 설립과 운영개황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농업법인 전수에 대한 관리카드 집계(농림부, '97.8) 및 87개 임의표본에 대한 우편조사(KREI, '97.6) 결과 분석
  - 주요내용
    - 농업법인 관리카드: 법인설립 개황, 설립후의 변동상황, 1996년도말 운영상태 등
    - 표본조사: 법인설립 동기, 운영실태, 향후 계획, 정책개선 방향 등
- 농업법인 운영실태의 사례조사 및 분석
  - 영농조합법인 23개소, 농업회사법인 11개소를 현지방문하여 청취조

## 사한 결과 분석

- 주요내용
  - 우수 법인경영의 경영수지 요인분석
  - 법인경영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토
  - 법인경영 운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의 영역과 내용
- 외국의 농업법인 관련제도와 정책에 대한 검토
  - 1960년대부터 농업법인제도를 실시한 프랑스, 일본의 사례
  - 주요내용 : 제도의 배경과 주요 정책내용, 농업법인 운영실태, 향후 전망 등
- 농업법인 육성정책의 개선방안 제시
  - 농업법인 육성정책의 방향 재정립
  - 건전한 법인경영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 부실법인의 정리 및 영세법인 통폐합 방안
  - 지역조합(농·축협)과의 공동발전 및 갈등해소 방안
  - 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방안

## 제 2 장

# 농업법인 제도와 정책의 추진경과

## 1. 농업법인 제도의 변화

### 1.1. 농업법인 제도의 성립

- 우리나라에서 농업법인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62년 12월에 당시 농림부가 주도한 농업구조개선심의회에서 자립경영 육성의 일환으로 협업농을 제시하면서부터임.
- 당시 농림부는 전국 5개 지구에 협업농장을 구상하여 1963년 3월에 광주협업개척농장(경기 광주), 운장산협업개척농장(전북 진안), 백운산협업개척농장(전남 광양), 박달군협업개척농장(경북 월성), 대리협업개척농장(경남 양산)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실시
- 정부의 시범사업을 계기로 농민운동적인 협업농장이 여러 곳에서 추진되었으나, 개척농장시범사업을 비롯하여 모두 협업농의 이상을 추구했을 뿐 결국은 실패로 끝남.
- 당시 협업경영이 개별농가의 조직화 요구라는 자발적인 동기라기

보다는 외부적 발의 내지는 운동적인 요소가 많았다는 점이 실패요인으로 지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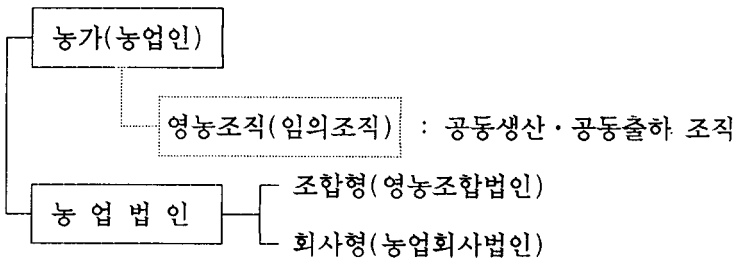
- 1970년대에 들어 이농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농가의 협동조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970년부터 농협이 자체조직으로 육성한 작목반과 1981년부터 농기계 보급을 위하여 지원된 기계화영농단은 농가간의 협업을 조장함.
- 1990년대 들어 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가 대두되면서 농업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농지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농업경영 주체로 법제화됨.
  - 1989년 5월,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영농조합법인(소농의 협업체) 및 위탁영농회사(기계화영농 대행업체)의 육성을 제시함.
  - 1990년 4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이어 동년 8월에 시행령, 11월에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농업법인의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짐.
  - 이에 의거하여 제1호 영농조합법인으로 경남 김해의 「청천홍농사영농조합법인」('90.11.26 설립등기), 제1호 위탁영농회사로 충북 옥천의 「옥천농업진흥주식회사」('90.11.2 설립등기)가 설립됨.
  - 1994년 12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위탁영농회사의 명칭이 농업회사법인으로 개칭되고, 새로 제정된 농지법에서 농지소유자격이 주어짐으로써(주식회사 제외)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농업법인으로 명명됨.

## 1.2. 농업법인 제도의 변천

- 정부가 농업법인을 육성하려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모화에 의한 대규모 경영체를 육성하여 자본·기술집약적 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음.

- 영농조합법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등으로 소득 향상
- 농업회사법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 :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작업을 대행

그림 2-1 우리나라 농업경영 주체의 제도적 지위



- 특히 영농조합법인은 소규모 영세농의 협업농으로 출발하였으나 1993년 및 1994년의 법 개정으로 설립 요건, 조합원 자격, 사업 내용 등이 크게 확충됨.
- 1993년 6월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 1993년 12월의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합원 자격의 확대 : 종래의 규모제한(1ha미만 농가 등) 폐지
  - 조합원의 농지소유제한 폐지 : 종래에는 농지 출자자만에 한해 현금 출자를 허용
  - 사업 영역의 확대 : 연접 시·군의 지역조합 설립, 농산물의 가공·판매·수출 등도 가능
- 이에 근거하여 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조직이 영농조합으로 다수 설립됨. (제1호 유통조합법인 : 전남 순창 「순창군농산물유통영농조합」, '93.1.6 설립등기)

- 1994년 12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 1995년 6월 시행령 공포
  - 조합원자격의 확대 : 영농경력, 거주제한 폐지
  - 준조합원제도 도입
- 이에 근거하여 소규모영농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회 성격의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기 시작하여 지역의 단위농협 또는 전문협동조합과 경합관계를 가지게 됨.

표 2-1 영농조합법인 제도의 변화 내용

|       | 1990년 제정                                                   | 1993년 개정                                                            | 1994년 개정                                                 |
|-------|------------------------------------------------------------|---------------------------------------------------------------------|----------------------------------------------------------|
| 설립 목적 |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
| 설립 주체 | 당해 시군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1ha미만의 소규모 농민 (또는 이에 준하는 농민)     | 당해 시군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 법인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시군 거주자, - 조합원의 농지소유 제한 폐지 |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중 정관이 정하는 자<br>- 영농경력, 거주제한 폐지<br>- 준조합원제도 도입 |
| 사업    | 농업경영과 그 부대사업,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작업의 대행, 기타 정관의 사업 | 좌향의 4개 사업,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 좌동                                                       |

자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개정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

### 1.3.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법인경영체는 조합 형태의 영농조합법인과 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두 종류가 있음. 따라서 법인 설립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어떤 법인 형태가 자신들이 구상하는 사업 성격과

맞을 것인가, 또는 조직 구성원간의 역할과 책임 한계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의사결정에는 어떤 형태가 적합한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2-2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점

| 구 분                                               | 영 농 조 합 법 인                                                                                                | 농 업 회 사 법 인                                                                                                 |
|---------------------------------------------------|------------------------------------------------------------------------------------------------------------|-------------------------------------------------------------------------------------------------------------|
| · 성격<br>· 법적근거<br>· 설립자격                          | · 협업적 농업경영<br>·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br>·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 · 기업적 농업경영<br>·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br>·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br>농지개량조합                                               |
| · 발기인수                                            | · 농업인 5인 이상                                                                                                | · 합명(무한2인), 합자(유·무한각1인)<br>유한(유한 2~50인), 주식(3인)                                                             |
| · 출자제한                                            |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br>-준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그 조합법인 총출자액의 1/3을 초과하지 못함                       | · 비농업인의 출자액의 합계는 그 농업회사법인 총출자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단, 주식회사는 1/3)                                                 |
| · 의결권<br>· 농지소유<br>· 타법준용<br>· 설립운영<br>· 생산자단체 가입 | · 1인1표<br>· 농지소유 가능<br>·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br>· 농업인이 자율적 설립·운영<br>· 농협, 축협, 수협, 임협, 염연초 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 · 출자지분에 의함<br>· 농지소유가능(주식회사는 불가)<br>·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br>· 좌동<br>· 농협, 축협, 수협, 임협, 염연초 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
| 세제지원<br>· 국세                                      | · 법인세 면제<br>· 부가가치세 면제<br>· 인지세 면제                                                                         | · 법인세 감면(5년간 50% 감면)<br>· 부가가치세 면제<br>· 인지세 면제                                                              |
| · 지방세                                             |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제                                                                            | · 좌동                                                                                                        |
| · 출자자 감면                                          | · 양도소득세 면제, 배당소득 감면, 상속세 공제                                                                                | · 없음                                                                                                        |
| 재정지원                                              |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각종 자율사업 참여                                                                                    |                                                                                                             |

자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관련법률에 의거 작성.

표 2-3 회사법인의 종류별 특성

| 구 분          | 합 명 회 사        | 합 자 회 사           | 유 한 회 사        | 주 식 회 사        |
|--------------|----------------|-------------------|----------------|----------------|
| 구성원          | 무한책임사원         | 유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 주주             |
| 구성원수         | 2명이상           | 유,무한 각1인 이상       | 2~50명          | 발기인 3인 이상      |
| 자본금          | 2,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5,000만원 이상     |
| 회사의<br>기관    | 사원총회,이사회       | 사원총회, 이사회         | 사원총회, 이사회      | 주주총회, 이사회      |
| 이사,감사<br>의 수 | 별도규정 없음        | 별도규정 없음           | 이사,감사<br>1인 이상 | 이사,감사<br>1인 이상 |
| 의결권          | 출자좌수당 1표       | 출자좌수당 1표          | 출자좌수당 1표       | 1주당 1표         |
| 지분양도         | 타사원의 과반수<br>동의 | 무한책임사원 전원<br>동의   | 타사원 전원 동의      | 무제한 양도 가능      |
| 정관공증         | 공증 필요없음        | 공증 필요없음           | 공증 받아야 함       | 공증 받아야 함       |
| 대표선임         | 사원중에서 선임       | 무한책임사원 중<br>에서 선임 | 사원중에서 선임       | 이사중에서 선임       |

자료: 상법의 회사 관련규정에서 정리.

- 법인 설립은 원칙적으로 농업인의 자출에 의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설립 절차가 다소 까다로움.
- 법인 성격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경영 체인 반면에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됨.
- 설립자격 :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영농조합법인은 생산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지개량조합과 비농업인도 참여가 가능함.
- 발기인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회사법인은 상법상의 발 기인 규정에 의함(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2~50인, 주식 회사 7인 이상).
- 비농업인 출자 : 영농조합법인은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총출자액의 1/3까지 출자가 가능하며,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 하되 총출자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단 주식회사는 1/3).

- 정관의 공증 : 설립 등기를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중에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정관의 공증이 필요 없으나,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공증이 필요함.
- 설립통지 : 법인의 설립등기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설립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이 때 농업회사법인은 구비서류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함.
- 사업의 범위에는 농업회사법인에게 다소 넓은 영역이 주어지지만, 주식회사에는 농지소유 자격이 제한됨.
  - 사업 범위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등이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이 가능함.
  - 농지소유 : 주식회사를 제외하고는 농지소유가 허용됨.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법인 형태에 따른 의결권의 형태임.
  - 영농조합법인은 기본 성격이 민법상의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차이가 없이 모두 1인 1표씩 동일함. 그러나 농업회사법인은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의하여 의결권이 달라지며, 또한 비농업인의 자본 출자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가짐.
  - 의사결정에 있어서 영농조합법인은 구성원의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의 권한이 큼.
-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이나 사업 운영면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농업인이 법인 형태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가 상대적으로 설립 절차가 용이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                                                                                                                                                                                                       |
|-------------------------------------------------------------------------------------------------------------------------------------------------------------------------------------------------------|
| <b>발 기</b>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업인·생산자단체 5인 이상</li> <li>○농업인: 1천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br/>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br/>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li> <li>○생산자 단체 : 협동조합</li> </ul> |
| <b>정관작성</b>                                                                                                                                                                                           |
| ○5인 이상의 농어업인                                                                                                                                                                                          |
| <b>창립총회</b>                                                                                                                                                                                           |
| ○정관(공증), 창립총회의사록(공증)                                                                                                                                                                                  |
| <b>설립등기</b>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재지 관할 등기소</li> <li>○구비서류 :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출자자산내역부, 조합대표주민등록</li> </ul>                                                                                         |
| <b>설립통지</b>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일 이내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li> <li>○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정관, 조합원 명부, 출자자산 내역</li> </ul>                                                                                    |

그림 2-3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                                                                                                                                                                     |
|---------------------------------------------------------------------------------------------------------------------------------------------------------------------|
| <b>발 기</b>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한회사 : 유한책임사원 2명 이상 50명 이내</li> <li>○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2명 이상</li> <li>○합자회사 : 유·무한책임사원 각1명</li> <li>○주식회사 : 주주 7인 이상</li> </ul> |
| <b>정관작성</b>                                                                                                                                                         |
| ○5인 이상의 농어업인 공동작성                                                                                                                                                   |
| <b>창립총회</b>                                                                                                                                                         |
| ○정관(공증), 창립총회의사록(공증)                                                                                                                                                |
| <b>설립등기</b>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재지 관할 등기소</li> <li>○구비서류 :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출자자산내역부, 설립등기신청서</li> </ul>                                                        |
| <b>설립통지</b>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일 이내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li> <li>○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정관, 사업계획서</li> </ul>                                                            |

## 2. 농업법인 지원정책의 변화

- 1990년 제도발족시에 개별농가와 대등한 지원 및 법인으로서의 세제상 혜택을 부여함.
  -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일반농가 수준의 지원
  -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계화영농단을 포함하여 농기계 구입자금 보조(50%) 지원
- 1994년 6월에 수립된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토대로 12월에 제정된 농림사업 통합실시요령에서 농업법인을 생산자단체로 규정하고 정책자금지원을 대폭 확충함.
  - 영농조합법인을 품목별 전문경영체로 육성하기로 하여 정책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1995년부터는 영농규모적정화사업도 가능하게 함.
  -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영농자금, 농기계자금, 농지구입자금, 유통·가공자금 등 지원
- 1996년 1월, 농업법인의 자금 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자금 성격의 농기업경영자금을 신설함.
  - 시설자금은 기존의 노후·불량시설의 보수와 대체, 사업규모 확장을 위한 시설 설치와 설비 구입, 시설현대화 등에 사용하도록 함. 또한 대출기간은 2~5년으로 차등화하고 이자율은 연리 5%.
  - 운전자금은 생산·가공·유통 등에 소요되는 자금과 그밖의 법인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정하며,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일시상환
- 1996년 7월, 정책사업의 자격기준 강화를 비롯한 법인경영체 운영개선대책을 시행함.
  - 정책사업대상 자격요건 강화
    - 총출자액 1억원 이상, 조합원 5가구 이상, 설립후 1~3년간의 운영 실적 평가 등

- 사후관리 강화

- 경영실적 우수법인에 대하여 운영자금 추가지원(농기업경영자금 2,000억원, 연리 5%),
- 경영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술지도 및 경영상담 강화(법인경영체의 운영현황을 카드화하여 지도소, 농·축협에 비치)

표 2-4 정책지원 사업의 자격요건(1997년)

| 구 분              | 사 업 명                                                                                                                                                                                                       | 지 원 자 격 및 선 정 기 준                                                                                                                        |
|------------------|-------------------------------------------------------------------------------------------------------------------------------------------------------------------------------------------------------------|------------------------------------------------------------------------------------------------------------------------------------------|
| 생산<br>유통<br>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가영농규모 적정화사업</li> <li>○농기계 지원</li> <li>○품목별 생산유통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채소, 고랭지채소, 양념채소, 과실, 화훼, 특작부문</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실적 1년 이상</li> <li>○구성원 2/3 이상이 해당 분야 영농 경력 3년 이상</li> <li>○사업성 검토</li> </ul>                   |
| 축산<br>경쟁력<br>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젖소, 돼지, 닭 경쟁력 제고사업</li> <li>○한우 경쟁력 제고사업</li> <li>○기타가축 육성</li> <li>○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실적 1년 이상</li> <li>○구성원 2/3 이상이 해당 분야 영농 경력 3년 이상</li> </ul>                                    |
| 생산<br>단지<br>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산단지 조성사업</li> <li>○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 지원</li> <li>○성장작목시범사업</li> <li>○벼직파재배 확대지원</li> <li>○어린묘 공동육묘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성원 2/3 이상이 해당 분야 영농 경력 3년 이상</li> </ul>                                                         |
| 유통<br>(공동<br>출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li> <li>○농수산물 포장센터 건설</li> <li>○농산물규격출하사업(실적에 따라)</li> <li>○공동규격출하사업(실적에 따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산단지에 위치하고 운영실적 3년 이상 법인으로 생산과 연계된 부대사업 지원</li> <li>○구성원 2/3 이상이 집하, 공동출하 등의 실적 3년 이상</li> </ul> |
| 가공<br>판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우전물판매점</li> <li>○계란가공시설 지원</li> <li>○농수산물 가공산업</li> <li>○미곡종합처리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실적 1년 이상되는 법인으로 법인의 생산사업과 연계된 부대사업으로 지원</li> <li>○자본금 규모</li> </ul>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농원 개발사업</li> <li>○농촌특산단지 육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본금 규모</li> <li>○사업성</li> </ul>                                                                  |

주: 사업성은 원료권 등을 고려한 경제적 시설규모, 수익성, 가용노동력 가동 등을 종합 검토

### 3. 다른 법률 및 정책과의 관계

#### 3.1. 협동조합법의 전문조합 규정

- 1962년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단위농협과 중앙회가 중심이며, 경제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품목전문조합(특수조합)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제한을 두어왔음.
  - 특히 1988년 이후 협동조합의 지도감독권이 시·도지사로부터 농협중앙회장에 위임되어 있었으며, 농협법에 전문조합 설립제한 규정(품목별 1도1조합 원칙)이 잔존하여 현실적으로 전문협동조합 설립이 용이하지 않았음.
  - 전문조합 설립인가 기준 : 설립 동의자 300명 이상, 경제사업 규모 15억원 이상, 출자금 5천만원 이상, 상근직원 7인 이상 등
  - 따라서 품목별 생산자조직 중에는 전문협동조합 설립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협동조합을 단념하고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은 당시 지역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택하는 경우도 나타났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전남 해남의 (주)참다래유통사업단('91.6 설립), 경기 이천의 양돈계열화업체인 (주)도드람('91.1 설립) 등이 있음.
- 1994년 농어촌발전위원회는 기존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소홀을 지적하면서 전문조합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도록 건의하였으며, 농림수산부는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방침」을 제정하여 전문농협을 폭넓게 인가하기로 결정함.
  - 전문농협 육성 방침에 따라 7월5일 전북생강농협, 진도원에협동조합이 새로이 인가됨.
- 1994년 12월, 협동조합법(농·수·축·임협)을 개정하여 전문조합의 지역별 설립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아울러 품목별 연합이 가능하도록 전문농협연합회 제도를 신설함.

표 2-5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 현황(1997.6 현재)

| 품목별<br>(업종별)  | 조합<br>총계 | 회 원 조 합 |                                                                 | 비 회 원 조 합 |                                                                                                            |
|---------------|----------|---------|-----------------------------------------------------------------|-----------|------------------------------------------------------------------------------------------------------------|
|               |          | 소계      | 조 합 명                                                           | 소계        | 조 합 명                                                                                                      |
| 사과            | 10       | 8       | 강릉,춘천원예,충북사과, 예<br>산,홍성능금, 공주과수<br>경북능금, 거창사과                   | 2         | 점촌문경원예,경주원예                                                                                                |
| 배             | 8        | 8       | 서울,대전원예,안성과수, 평<br>택과수,아산원예,천안배,<br>나주배,울산배                     |           |                                                                                                            |
| 감             | 3        | 1       | 경남단감                                                            | 2         | 청도감, 진주단감                                                                                                  |
| 복숭아           | 2        | 1       | 경기동부과수                                                          | 1         | 연기원예                                                                                                       |
| 포 도           | 2        | 2       | 경기서부원예                                                          |           |                                                                                                            |
| 감 굴           | 1        | 1       | 제주감굴                                                            |           |                                                                                                            |
| 복합채소          | 15       | 11      | 인천,부천,안양,원주,전주,군<br>산,남원,광주,목포,여수,마산<br>원예                      | 4         | 옥천,해남,진도,안동원예                                                                                              |
| 양 파           | 1        |         |                                                                 | 1         | 창녕양파                                                                                                       |
| 생 강           | 1        |         |                                                                 | 1         | 전북생강                                                                                                       |
| 감 자           | 2        | 1       | 대관령원예                                                           | 1         | 제주감자                                                                                                       |
| 과채류           | 14       | 10      | 토마토 : 대구경북,익산원예<br>오이 : 광양,순천,상주,진주<br>수박참외 : 성주,서산,정읍,<br>김제원예 | 4         | 수박참외 : 하동수박,<br>김천, 고창원예<br>오이 : 경북채소                                                                      |
| 화 화           | 8        | 3       | 경기화훼, 부산경남화훼,<br>경남중부화훼                                         | 5         | 한국절화,서경분화,영남화훼<br>, 경기충청난,호남화훼                                                                             |
| 약용작물<br>(생 약) | 3        |         |                                                                 | 3         | 청양구기자,전북생약,<br>전남생약                                                                                        |
| 특용작물          | 2        |         |                                                                 | 2         | 강화완초, 한산모시                                                                                                 |
| 양 잡           | 29       |         |                                                                 | 29        | 여주,홍천,횡성,충청,청원,괴<br>산,제천,충주,공주,서산,무주,<br>장수,임실,남원,순창,정읍,김<br>제,동부,안동,문경,상주,청도,<br>영천,청구,예천,영일,함양,산<br>청,거창 |
| 합 계           | 101      | 46      |                                                                 | 55        |                                                                                                            |

자료: 농협중앙회 내부자료.

주: 주작목은 작목별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점유비가 20%이상인 품목.

- 전문농협 설립은 농림부의 인가 사항이며, 또한 농협중앙회는 전문조합 중에서 선별적으로 회원조합으로서의 혜택을 부여함.
- 전문농협의 사업영역 :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완초, 버섯, 특용작물 등
- 전문조합 설립기준 : 조합원수 300명 이상(화훼 200명), 출자금 총액 1억원 이상
- 전문조합연합회 설립기준: 3개 이상의 전문조합이 결성
-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 가입 : 설립자본금이나 자금상환능력 등 경영기준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대체로 1년 이상의 운영실적에서 1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야 함.

### 3.2. 기타 관련법규

- 법인의 성격 : 민법이나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일반법인과는 달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므로 '특수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설립 이후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 민법의 조합 규정,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의 규정에 의함.
- 관련세제 : 농업법인은 조세의무(직접 세금을 납부할 의무) 및 협력의무(세금징수를 대리하거나 세금징수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를 가짐.
- 정관과 자치법규 : 법인의 定款은 조직·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가 됨. 따라서 농림부장관은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특별법을 모법으로 하는 정관을 예시(정관예)하고 자의적인 정관 작성을 방지하고 있음.
  - 정관예와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가입 : 농업법인은 소재지의 농협 등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준조합원으로서 생산자단체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짐.

## 제 3 장

# 농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개황

### 1. 전수조사 결과

- 농림부에서 시·군으로 하여금 「농업법인경영체 관리카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집계한 바에 의하면, 1996년말까지 전국에서 설립된 농업법인 총수는 4,906개소로 집계되며, 이를 법인 형태별로 보면 영농조합법인이 3,487개소(71.1%)이고 농업회사법인이 1,419개소(28.9%)임.
- 연도별 설립 동향을 보면, 농업회사법인은 완만한 증가 추세이나, 영농조합법인은 1994년 이후부터 설립이 크게 증가하다가 1996년부터는 증가 속도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임. 여기에는 법인에 대한 정책 지원 기준이 강화된 영향도 있지만, 지역 단위로 농업법인이 점차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 형태별 구성비를 보면, 합명회사(37%)와 합자회사(30%)가 많음. 이는 영농조합법인과 마찬가지로 정관의 공증이 필요 없는 등 설립 기준과 절차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사업별 설립 동향을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축산과 원예작물(채소, 과수, 화훼)이 각각 19.7%과 25.0%로서 가장 많으며 가공·유통사업도 23.6%를 차지함. 농업회사법인은 영농대행이 78.4%를 차지하여 종래의 위탁영농회사 범주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됨.

표 3-1 농업법인의 연도별 설립 동향

단위: 개소(%)

| 구 분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합 계              |
|------|------------|-------------|---------------|---------------|-----------------|-----------------|-----------------|------------------|
| 영농조합 | 1<br>(0.0) | 26<br>(0.7) | 60<br>(1.7)   | 230<br>(6.6)  | 1,016<br>(29.1) | 1,207<br>(34.6) | 947<br>(27.2)   | 3,487<br>(100.0) |
| 농업회사 | 6<br>(0.4) | 59<br>(4.2) | 166<br>(11.7) | 280<br>(19.7) | 338<br>(23.8)   | 326<br>(23.0)   | 244<br>(17.2)   | 1,419<br>(100.0) |
| 합 계  | 7<br>(0.1) | 85<br>(1.7) | 226<br>(4.6)  | 510<br>(10.4) | 1,354<br>(27.6) | 1,533<br>(31.2) | 1,191<br>(24.3) | 4,906<br>(100.0) |

자료: 농림부의 농업법인경영체 관리카드 집계결과(1997.9)에서 작성함.  
이하의 표에서 같음.

표 3-2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별 설립동향(1996년말 현재)

단위:개소(%)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합 계              |
|---------------|---------------|---------------|--------------|------------------|
| 523<br>(36.9) | 427<br>(30.1) | 342<br>(24.1) | 127<br>(9.0) | 1,419<br>(100.0) |

표 3-3 영농조합법인의 사업형태별 설립동향

단위: 개소

| 구 분  | 농 업 생 산 |     |     |     |     |     |     |     | 가공  | 유통  | 영농<br>대행 | 기타 | 합계    |
|------|---------|-----|-----|-----|-----|-----|-----|-----|-----|-----|----------|----|-------|
|      | 쌀       | 채소  | 과수  | 화훼  | 특작  | 축산  | 기타  | 복합  |     |     |          |    |       |
| 199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1     |
| 1991 | 7       | 0   | 0   | 0   | 0   | 5   | 4   | 1   | 2   | 3   | 2        | 2  | 26    |
| 1992 | 6       | 3   | 2   | 1   | 0   | 3   | 33  | 3   | 3   | 4   | 0        | 2  | 60    |
| 1993 | 8       | 9   | 7   | 40  | 3   | 73  | 57  | 6   | 27  | 34  | 1        | 1  | 230   |
| 1994 | 50      | 135 | 70  | 34  | 47  | 194 | 124 | 32  | 141 | 163 | 14       | 12 | 1,016 |
| 1995 | 49      | 188 | 144 | 48  | 78  | 258 | 89  | 65  | 110 | 160 | 4        | 14 | 1,207 |
| 1996 | 171     | 112 | 81  | 36  | 65  | 154 | 78  | 46  | 75  | 101 | 17       | 11 | 947   |
| 합계   | 291     | 447 | 304 | 123 | 193 | 687 | 386 | 153 | 358 | 465 | 38       | 42 | 3,487 |

표 3-4 농업회사법인의 사업형태별 설립동향

단위: 개소

| 구분   | 농업생산 |    |    |    |    |    |    |    | 가공 | 유통 | 영농<br>대행 | 기타 | 합계    |
|------|------|----|----|----|----|----|----|----|----|----|----------|----|-------|
|      | 쌀    | 채소 | 과수 | 화훼 | 특작 | 축산 | 기타 | 복합 |    |    |          |    |       |
| 1990 | 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        | 0  | 6     |
| 1991 | 10   | 1  | 0  | 0  | 0  | 0  | 2  | 0  | 0  | 0  | 46       | 0  | 59    |
| 1992 | 18   | 1  | 0  | 1  | 0  | 0  | 4  | 1  | 1  | 0  | 139      | 1  | 166   |
| 1993 | 40   | 2  | 0  | 0  | 0  | 0  | 5  | 1  | 2  | 0  | 230      | 0  | 280   |
| 1994 | 60   | 0  | 0  | 0  | 0  | 0  | 7  | 3  | 1  | 0  | 267      | 0  | 338   |
| 1995 | 55   | 0  | 0  | 0  | 0  | 0  | 6  | 2  | 1  | 5  | 260      | 1  | 326   |
| 1996 | 48   | 4  | 1  | 2  | 2  | 3  | 8  | 3  | 1  | 1  | 166      | 1  | 244   |
| 합계   | 233  | 8  | 1  | 3  | 2  | 3  | 32 | 10 | 6  | 6  | 1,112    | 3  | 1,419 |

표 3-5 농업법인의 사업형태별 설립현황(1996년말 현재)

단위: 개소(%)

| 구분       | 농업생산          |               |              |              |              |               |               |              | 가공            | 유통            | 영농<br>대행        | 기타          | 합계               |
|----------|---------------|---------------|--------------|--------------|--------------|---------------|---------------|--------------|---------------|---------------|-----------------|-------------|------------------|
|          | 쌀             | 채소            | 과수           | 화훼           | 특작           | 축산            | 기타            | 복합           |               |               |                 |             |                  |
| 영농<br>조합 | 291<br>(8.3)  | 447<br>(12.8) | 304<br>(8.7) | 123<br>(3.5) | 193<br>(5.5) | 687<br>(19.7) | 386<br>(11.1) | 153<br>(4.4) | 358<br>(10.3) | 465<br>(13.3) | 38<br>(1.1)     | 42<br>(1.2) | 3,487<br>(100.0) |
| 농업<br>회사 | 233<br>(16.4) | 8<br>(0.6)    | 1<br>(0.1)   | 3<br>(0.2)   | 2<br>(0.1)   | 3<br>(0.2)    | 32<br>(2.3)   | 10<br>(0.7)  | 6<br>(0.4)    | 6<br>(0.4)    | 1,112<br>(78.4) | 3<br>(0.2)  | 1,419<br>(100.0) |
| 합계       | 524<br>(10.7) | 455<br>(9.3)  | 305<br>(6.2) | 126<br>(2.6) | 195<br>(4.0) | 690<br>(14.1) | 418<br>(8.5)  | 163<br>(3.3) | 364<br>(7.4)  | 471<br>(9.6)  | 1,150<br>(23.4) | 45<br>(0.9) | 4,906<br>(100.0) |

표 3-6 농업법인의 시도별 설립현황(1996년말 현재)

단위: 개소(%)

|          | 시단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
| 영농<br>조합 | 49<br>(1.4) | 192<br>(5.5) | 304<br>(8.7) | 195<br>(5.6) | 363<br>(10.4) | 457<br>(13.1) | 920<br>(36.4)   | 478<br>(13.8) | 460<br>(13.2) | 69<br>(2.0) | 3,487<br>(100.0) |
| 농업<br>회사 | 32<br>(2.3) | 121<br>(8.5) | 73<br>(5.1)  | 78<br>(5.5)  | 251<br>(17.7) | 209<br>(14.7) | 176<br>(12.4)   | 245<br>(17.3) | 217<br>(15.3) | 17<br>(1.2) | 1,419<br>(100.0) |
| 합계       | 81<br>(1.7) | 313<br>(6.4) | 377<br>(7.7) | 273<br>(5.6) | 614<br>(12.5) | 666<br>(13.6) | 1,096<br>(22.3) | 723<br>(14.7) | 677<br>(13.8) | 86<br>(1.8) | 4,906<br>(100.0) |

주: 시단위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합계.

- 농업법인의 평균 출자자 수는 영농조합법인이 17명, 농업회사법인이 6명임. 영농조합법인은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출자자가 많으며, 특히 과수법인은 33명이고 유통법인은 35명임.
- 농업법인의 출자자 수는 전체 87,024명으로 집계되며, 이 중에서 농업인은 86,086명(98.9%)임. 출자자 중에서 비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로서 극히 낮으며, 비농업인 출자를 허용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도 1.2%에 불과함.

표 3-7 농업법인의 사업형태별 평균 출자자 수(1996년말 현재)

단위: 명

| 구분   | 농업생산 |    |    |    |    |    |    |    | 가공 | 유통 | 영농대행 | 기타 | 평균 |
|------|------|----|----|----|----|----|----|----|----|----|------|----|----|
|      | 쌀    | 채소 | 과수 | 화훼 | 특작 | 축산 | 기타 | 복합 |    |    |      |    |    |
| 영농조합 | 7    | 15 | 33 | 9  | 13 | 10 | 9  | 11 | 26 | 35 | 12   | 12 | 17 |
| 농업회사 | 6    | 7  | 5  | 6  | 4  | 7  | 6  | 6  | 5  | 7  | 6    | 6  | 6  |

표 3-8 농업법인의 출자자 변동 현황

단위: 명(%)

|      | 설립당시             |              |             |                   | 1996년말 현재        |              |             |                   |
|------|------------------|--------------|-------------|-------------------|------------------|--------------|-------------|-------------------|
|      | 농업인              | 비농업인         | 단체          | 합계                | 농업인              | 비농업인         | 단체          | 합계                |
| 영농조합 | 59,864<br>(99.1) | 497<br>(0.8) | 6<br>(0.1)  | 60,367<br>(100.0) | 78,378<br>(99.0) | 825<br>(1.0) | 5<br>(0.0)  | 79,208<br>(100.0) |
| 농업회사 | 8,060<br>(98.9)  | 79<br>(1.0)  | 12<br>(0.1) | 8,151<br>(100.0)  | 7,708<br>(98.6)  | 95<br>(1.2)  | 13<br>(0.2) | 7,816<br>(100.0)  |
| 합계   | 67,924<br>(99.1) | 576<br>(0.8) | 18<br>(0.1) | 68,518<br>(100.0) | 86,086<br>(98.9) | 920<br>(1.1) | 18<br>(0.0) | 87,024<br>(100.0) |

- 농업법인의 평균 출자액은 영농조합법인이 1억789만원이고, 농업회사법인이 8,182만원임. 출자금은 주로 현금 출자로 이루어지며, 그밖에 농기계나 시설 등의 현물출자도 많은 부분임.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출자가 미미하여 전체 출자액의 22%에 불과함.

- 정부의 정책사업을 수혜받은 농업법인은 모두 3,563개소(1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포함)로서 금액으로는 총 9,426억원에 이른다. 이 중에서 영농조합법인은 총 1,981개소가 7,803억원, 농업회사법인은 총 1,582개소가 1,623억원을 수혜한 것으로 집계됨.
- 정부지원액 중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4%를 점유하며, 특히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정책지원은 1994년부터 매년 보조금만으로도 1천억 이상씩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3-9 농업법인의 평균 출자금 현황(1996년말 현재)

단위: 만원(%)

|      | 현 금             | 농 지             | 기타토지        | 시설물            | 기 타             | 합 계               |
|------|-----------------|-----------------|-------------|----------------|-----------------|-------------------|
| 영농조합 | 5,048<br>(46.8) | 2,377<br>(22.0) | 94<br>(0.9) | 1,048<br>(9.7) | 2,221<br>(20.6) | 10,789<br>(100.0) |
| 농업회사 | 4,327<br>(52.9) | 610<br>(7.5)    | 19<br>(0.2) | 573<br>(7.0)   | 2,652<br>(32.4) | 8,182<br>(100.0)  |

표 3-10 농업법인의 연도별 정책지원금액

단위: 개소,억원

|          |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합 계    |
|----------|---------|------|-------|-------|--------|--------|--------|--------|
| 영농<br>조합 | 법인수     | 8    | 15    | 49    | 304    | 683    | 922    | 1981   |
|          | 지원금액    | 2.9  | 81.0  | 236.0 | 1154.7 | 2705.6 | 3622.8 | 7803.0 |
|          | - 국비보조  | 0.5  | 21.0  | 62.7  | 359.2  | 838.0  | 1088.6 | 2370.0 |
|          | - 지방세보조 | 1.7  | 17.9  | 49.3  | 321.2  | 709.4  | 905.6  | 2005.0 |
|          | - 융 자   | 0.7  | 42.1  | 123.9 | 474.4  | 1158.3 | 1628.6 | 3428.0 |
| 농업<br>회사 | 법인수     | 25   | 128   | 293   | 354    | 439    | 343    | 1582   |
|          | 지원금액    | 21.4 | 127.0 | 304.7 | 351.5  | 511.2  | 307.4  | 1623.2 |
|          | - 국비보조  | 4.3  | 28.7  | 63.6  | 78.4   | 126.9  | 73.3   | 375.2  |
|          | - 지방세보조 | 5.3  | 26.3  | 62.6  | 79.3   | 113.3  | 63.7   | 350.5  |
|          | - 융 자   | 11.8 | 72.0  | 178.5 | 193.8  | 271.0  | 170.4  | 897.5  |
| 합 계      | 법인수     | 33   | 143   | 342   | 658    | 1,122  | 1,265  | 3563   |
|          | 지원금액    | 24.3 | 208.0 | 540.7 | 1506.3 | 3216.8 | 3930.2 | 9426.3 |
|          | - 국비보조  | 4.8  | 49.7  | 126.3 | 437.5  | 964.9  | 1161.9 | 2745.1 |
|          | - 지방세보조 | 6.9  | 44.2  | 111.9 | 400.6  | 822.6  | 969.3  | 2355.5 |
|          | - 융 자   | 12.6 | 114.1 | 302.5 | 668.2  | 1429.3 | 1798.0 | 4324.7 |

표 3-11 농업법인에 대한 사업별 정부지원액(1996년말 현재)

단위 : 억원

| 생 산        |        | 유 통         |        | 가 공         |       |
|------------|--------|-------------|--------|-------------|-------|
| 사업별        | 금 액    | 사업별         | 금 액    | 사업별         | 금액    |
| 영농금액적정화    | 3.5    | 미곡종합처리장     | 45.5   | 중소농고품질농산물지원 | 106.5 |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 376.0  | 과실생산유통      | 823.9  | 농촌활력화시범사업   | 35.1  |
| 생산자조직농기계지원 | 884.8  | 시설채소생산유통    | 2222.9 |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 7.5   |
| 농기계보관창고설치  | 188.5  | 양념채소시설유통    | 177.4  | 농촌특산단지육성    | 6.8   |
| 공동퇴비제조장    | 242.2  | 고랭지채소생산유통   | 57.0   |             |       |
| 어린모공동육묘장   | 1.7    | 화훼작물생산유통    | 1087.3 |             |       |
| 성장작목시범사업   | 67.4   | 특용작물생산유통    | 196.0  |             |       |
|            |        | 농산물규격출하     | 24.2   |             |       |
|            |        |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  | 197.3  |             |       |
|            |        | 농산물물류표준화    | 3.5    |             |       |
|            |        | 산지포장개선탐시범사업 | 6.8    |             |       |
|            |        | 농산물포장센터건설   | 114.6  |             |       |
|            |        | 생산자단체출하조정   | 4.3    |             |       |
|            |        | 공동규격출하지원    | 9.1    |             |       |
|            |        | 품목별생산자조직육성  | 2.2    |             |       |
|            |        | 농산물가공산업육성   | 406.2  |             |       |
|            |        | 농촌특산물판매장설치  | 3.1    |             |       |
| 합 계        | 1764.1 | 합 계         | 5381.3 | 합 계         | 155.9 |

| 축 산      |        | 임 업     |      | 기 타       |      |
|----------|--------|---------|------|-----------|------|
| 사업별      | 금 액    | 사업별     | 금 액  | 사업별       | 금 액  |
| 한우경쟁력강화  | 252.6  | 임도시설    | 2.0  | 농림수산물기술개발 | 1.7  |
| 젓소경쟁력강화  | 14.3   | 임산소득증대  | 26.5 | 선도농업경영체육성 | 4.2  |
| 돼지경쟁력강화  | 126.1  | 임산물가공지원 | 10.4 | 농업경영자금    | 51.5 |
| 닭경쟁력강화   | 116.2  | 산촌종합개발  | 22.4 |           |      |
| 기타가축육성   | 22.5   |         |      |           |      |
| 조사료기반확충  | 6.1    |         |      |           |      |
| 축산분뇨처리시설 | 224.4  |         |      |           |      |
| 축산단지조성   | 540.4  |         |      |           |      |
| 가축계열화    | 28.3   |         |      |           |      |
| 가공판매시설운영 | 78.6   |         |      |           |      |
| 축산물품질향상  | 11.6   |         |      |           |      |
| 사료제조시설설치 | 3.2    |         |      |           |      |
| 축산경영자금   | 3.3    |         |      |           |      |
| 한우특화사업   | 4.5    |         |      |           |      |
| 합 계      | 1432.1 | 합 계     | 61.3 | 합 계       | 57.4 |

- 농업법인의 평균 부채규모는 1996년말 현재 영농조합법인이 3억원 수준이고 농업회사법인은 7천만원 수준으로 집계됨. 이러한 차입금의 구성을 보면, 정부의 정책자금의 주류로서 3/4을 차지하고 금융기관 대출액이 20% 수준, 그리고 사채가 2% 정도임. 특히 영농조합법인은 정부지원사업 규모가 큰 만큼 융자액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2 농업법인의 평균 부채규모(1996년말 현재)

단위: 만원(%)

|      | 법인수   | 부 채 구 성          |                 |              |                   |
|------|-------|------------------|-----------------|--------------|-------------------|
|      |       | 정부자금             | 금융기관            | 사 채          | 합 계               |
| 영농조합 | 1,393 | 23,164<br>(78.1) | 5,849<br>(19.7) | 665<br>(2.2) | 29,678<br>(100.0) |
| 농업회사 | 1,255 | 5,225<br>(75.6)  | 1,629<br>(23.6) | 56<br>(0.8)  | 6,910<br>(100.0)  |
| 합 계  | 2,648 | 14,662<br>(77.6) | 3,849<br>(20.4) | 376<br>(2.0) | 18,887<br>(100.0) |

- 농업법인의 운영 상태를 보면, 운영중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1,808개 소로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농업회사법인은 전체의 91%인 1,288 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됨.
  - 사업을 중단하거나 실적이 없는 영농조합법인은 1,049개소로서 전체의 30.1%를 차지하는 반면에, 농업회사법인은 51개소(3.6%)만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됨.
  - 개인사업으로 전환된 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 57개소(1.6%)이고 농업회사법인이 13개소(0.9%)임.
- 운영중인 법인에 대한 1996년말의 경영수지 상태를 보면, 영농조합법인이 평균 8천만원 정도의 이익을 나타내고, 농업회사법인은 3천만원 수준으로서 각각 출자자수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5백만원 정도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운영중인 법인 중에서 수익이 없는 영농조합은 196개소(10.5%)이고

농업회사가 51개소(4.0%)인 반면에,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법인도 각각 320개소(17.7%)와 81개소(6.3%)로 집계됨.

표 3-13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상태(1996년말 현재)

단위: 개소(%)

|      | 법인수              | 운영중             | 준비중           | 중단           | 실적없음          | 개별영농        |
|------|------------------|-----------------|---------------|--------------|---------------|-------------|
| 쌀    | 291              | 103             | 28            | 10           | 145           | 5           |
| 채 소  | 447              | 250             | 70            | 7            | 98            | 22          |
| 과 수  | 304              | 166             | 47            | 8            | 76            | 7           |
| 화 껍  | 123              | 62              | 35            | 3            | 22            | 1           |
| 특 작  | 193              | 120             | 38            | 6            | 28            | 1           |
| 축 산  | 687              | 361             | 131           | 30           | 157           | 8           |
| 기 타  | 386              | 93              | 39            | 16           | 237           | 1           |
| 복 합  | 153              | 70              | 16            | 9            | 57            | 1           |
| 가 공  | 358              | 224             | 77            | 8            | 45            | 4           |
| 유 통  | 465              | 319             | 80            | 7            | 53            | 6           |
| 영농대행 | 38               | 24              | 5             | 4            | 4             | 1           |
| 기 타  | 42               | 16              | 7             | 2            | 17            | 0           |
| 합 계  | 3,487<br>(100.0) | 1,808<br>(51.8) | 573<br>(16.4) | 110<br>(3.2) | 939<br>(26.9) | 57<br>(1.6) |

표 3-14 농업회사법인의 운영상태(1996년말 현재)

단위: 개소(%)

|      | 법인수              | 운영중             | 준비중         | 중단          | 실적없음        | 개별영농        |
|------|------------------|-----------------|-------------|-------------|-------------|-------------|
| 쌀    | 233              | 203             | 7           | 1           | 18          | 4           |
| 채 소  | 8                | 7               | 1           | 0           | 0           | 0           |
| 과 수  | 1                | 1               | 0           | 0           | 0           | 0           |
| 화 껍  | 3                | 2               | 1           | 0           | 0           | 0           |
| 특 작  | 2                | 1               | 1           | 0           | 0           | 0           |
| 축 산  | 3                | 1               | 0           | 0           | 2           | 0           |
| 기 타  | 32               | 27              | 0           | 2           | 2           | 1           |
| 복 합  | 10               | 8               | 2           | 0           | 0           | 0           |
| 가 공  | 6                | 5               | 1           | 0           | 0           | 0           |
| 유 통  | 6                | 1               | 2           | 0           | 3           | 0           |
| 영농대행 | 1,112            | 1,029           | 52          | 10          | 13          | 8           |
| 기 타  | 3                | 3               | 0           | 0           | 0           | 0           |
| 합계   | 1,419<br>(100.0) | 1,288<br>(90.8) | 67<br>(4.7) | 13<br>(0.9) | 38<br>(2.7) | 13<br>(0.9) |

표 3-15 운영중인 농업법인의 경영수지(1996년말 현재)

단위: 개소, 억원

|      | 영농조합법인 |     |     |     | 농업회사법인 |      |      |     |
|------|--------|-----|-----|-----|--------|------|------|-----|
|      | 법인수    | 수입  | 지출  | 이익  | 법인수    | 수입   | 지출   | 이익  |
| 쌀    | 103    | 1.5 | 0.9 | 0.6 | 203    | 1.3  | 0.8  | 0.5 |
| 채소   | 250    | 2.4 | 1.5 | 0.8 | 7      | 5.8  | 5.3  | 0.5 |
| 과수   | 166    | 4.3 | 2.1 | 2.2 | 1      | 0.5  | 0.1  | 0.3 |
| 화훼   | 62     | 4.9 | 3.8 | 1.1 | 2      | 21.3 | 20.8 | 0.5 |
| 특작   | 120    | 1.7 | 1.1 | 0.6 | 1      | 7.5  | 7.3  | 0.2 |
| 축산   | 361    | 3.6 | 2.9 | 0.7 | 1      | 0.9  | 0.6  | 0.3 |
| 기타   | 93     | 2.1 | 1.6 | 0.5 | 27     | 1.8  | 1.4  | 0.4 |
| 복합   | 70     | 2.3 | 1.9 | 0.4 | 8      | 2.6  | 1.5  | 0.1 |
| 가공   | 224    | 3.6 | 3.1 | 0.5 | 5      | 1.5  | 1.2  | 0.2 |
| 유통   | 319    | 3.2 | 2.7 | 0.5 | 1      | 27.1 | 28.5 | 0.3 |
| 영농대행 | 24     | 1.1 | 0.6 | 0.5 | 1,029  | 1.0  | 0.7  | 0.3 |
| 기타   | 16     | 1.7 | 1.2 | 0.5 | 3      | 0.7  | 0.4  | 0.2 |
| 평균   | 1,808  | 3.0 | 2.3 | 0.8 | 1,288  | 1.1  | 0.8  | 0.3 |

표 3-16 영농조합법인의 수익규모별 분포(1996년말 현재)

단위: 개소, %

|      | 운영중<br>법인수       | 적자           | 0           | 1000만원<br>미만  | 1000-<br>3000만원 | 3000-<br>5000만원 | 5000-<br>1억원  | 1억원<br>이상     |
|------|------------------|--------------|-------------|---------------|-----------------|-----------------|---------------|---------------|
| 쌀    | 103              | 4            | 4           | 25            | 28              | 16              | 9             | 17            |
| 채소   | 250              | 19           | 1           | 45            | 48              | 27              | 51            | 59            |
| 과수   | 166              | 4            | 5           | 37            | 26              | 22              | 27            | 45            |
| 화훼   | 62               | 4            | 2           | 12            | 8               | 4               | 13            | 19            |
| 특작   | 120              | 7            | 4           | 26            | 32              | 14              | 18            | 19            |
| 축산   | 361              | 42           | 9           | 64            | 79              | 55              | 54            | 58            |
| 기타   | 93               | 5            | 2           | 23            | 16              | 24              | 11            | 12            |
| 복합   | 70               | 4            | 2           | 10            | 33              | 7               | 6             | 8             |
| 가공   | 224              | 32           | 4           | 40            | 53              | 22              | 43            | 30            |
| 유통   | 319              | 30           | 8           | 95            | 66              | 26              | 45            | 49            |
| 영농대행 | 24               | 1            | 1           | 7             | 5               | 5               | 2             | 3             |
| 기타   | 16               | 2            | 0           | 3             | 3               | 3               | 4             | 1             |
| 합계   | 1,808<br>(100.0) | 154<br>(8.5) | 42<br>(2.3) | 387<br>(21.4) | 397<br>(22.0)   | 225<br>(12.4)   | 283<br>(15.7) | 320<br>(17.7) |

표 3-17 농업회사법인의 수익규모별 분포(1996년말 현재)

단위: 개소, %

|      | 운영중<br>법인수       | 적자          | 0          | 1000만원<br>미만  | 1000-<br>3000만원 | 3000-<br>5000만원 | 5000-<br>1억원  | 1억원<br>이상   |
|------|------------------|-------------|------------|---------------|-----------------|-----------------|---------------|-------------|
| 쌀    | 203              | 4           | 0          | 42            | 72              | 17              | 33            | 35          |
| 채소   | 7                | 1           | 0          | 0             | 2               | 0               | 3             | 1           |
| 과수   | 1                | 0           | 0          | 0             | 0               | 1               | 0             | 0           |
| 화훼   | 2                | 0           | 0          | 0             | 0               | 1               | 1             | 0           |
| 특작   | 1                | 0           | 0          | 0             | 1               | 0               | 0             | 0           |
| 축산   | 1                | 0           | 0          | 0             | 0               | 1               | 0             | 0           |
| 기타   | 27               | 0           | 0          | 3             | 17              | 3               | 1             | 3           |
| 복합   | 8                | 0           | 0          | 0             | 2               | 2               | 2             | 2           |
| 가공   | 5                | 1           | 0          | 1             | 1               | 1               | 1             | 0           |
| 유통   | 1                | 1           | 0          | 0             | 0               | 0               | 0             | 0           |
| 영농대행 | 1,029            | 41          | 3          | 266           | 392             | 155             | 132           | 40          |
| 기타   | 3                | 0           | 0          | 0             | 2               | 1               | 0             | 0           |
| 합계   | 1,288<br>(100.0) | 48<br>(3.7) | 3<br>(0.2) | 312<br>(24.2) | 489<br>(38.0)   | 182<br>(14.1)   | 173<br>(13.4) | 81<br>(6.3) |

○ 영농조합법인 중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법인은 1,612개소로서 전체의 46.2%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흑자경영을 실현하고 있는 법인을 사업별로 보면, 농업경영 보다는 농산물 가공이나 유통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농업생산을 하고 있는 법인 중에서 흑자경영 법인의 비율은 쌀 32.6%, 채소 51.5%, 과수 51.6%, 화훼 45.5%, 특작 56.5%, 축산 45.1% 등인 반면에 가공사업은 52.5%이고 유통사업은 60.4%임.
- 그러나 기타 부문의 흑자경영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생산업의 기타 22.3%, 기타사업 33.3%), 사업이 명확하지 못한 법인이 경영실적도 저조함을 알 수 있음.

## 2. 표본조사 결과

- 1995년말까지 설립된 농업법인 중에서 영농조합법인 30개소 및 농업회사법인 15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1997년 6월에 부록의 설문지를 통한 우편조사를 실시함.
- 조사표의 회수율은 19% 정도로 극히 낮으며, 특히 반송된 조사표가 30개에 달함. 따라서 여기에 분석된 결과는 대체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법인의 사례인 것으로 사료됨.
- 조사된 농업법인의 2/3 정도가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개별농가의 농업경영과는 별개의 법인체를 운영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3-18 법인 설립의 목적

단위: 개소, %

| 구 분  | 공동작업<br>공동이용  | 조직적인<br>작업대행  | 협업통한<br>규모확대  | 공동출하<br>판매장운영 | 소득증대<br>가공산업  | 기타          | 합계            |
|------|---------------|---------------|---------------|---------------|---------------|-------------|---------------|
| 영농조합 | 11<br>(16.42) | 3<br>(4.48)   | 21<br>(31.34) | 18<br>(26.87) | 10<br>(14.93) | 4<br>(5.97) | 67<br>(100.0) |
| 농업회사 | 10<br>(50.00) | 5<br>(25.00)  | 2<br>(10.00)  | 2<br>(10.00)  | 1<br>(5.00)   | 0<br>(0.00) | 20<br>(100.0) |
| 합 계  | 21<br>(24.14) | 23<br>(26.44) | 23<br>(26.44) | 20<br>(22.99) | 11<br>(12.64) | 4<br>(4.60) | 87<br>(100.0) |

주: KREI 조사결과(1997.6)에 의함. 이하의 표에서 같음.

표 3-19 설립 목적이 달성된 정도

단위: 개소, %

| 구 분  | 아주 만족함      | 거의 달성함        | 달성 못함         | 합계            |
|------|-------------|---------------|---------------|---------------|
| 영농조합 | 2<br>(2.99) | 42<br>(62.69) | 23<br>(34.33) | 67<br>(100.0) |
| 농업회사 | 0<br>(0.00) | 13<br>(65.00) | 7<br>(35.00)  | 20<br>(100.0) |
| 합 계  | 2<br>(2.30) | 55<br>(63.22) | 30<br>(34.48) | 87<br>(100.0) |

표 3-20 법인경영과 개별농가와의 관계

단위: 개소, %

| 구 분  | 개별농가 통합      | 별개의 법인체       | 기타          | 합계            |
|------|--------------|---------------|-------------|---------------|
| 영농조합 | 3<br>(4.48)  | 58<br>(86.57) | 6<br>(8.96) | 67<br>(100.0) |
| 농업회사 | 2<br>(10.00) | 17<br>(85.00) | 1<br>(5.00) | 20<br>(100.0) |
| 합 계  | 5<br>(5.75)  | 72<br>(82.76) | 7<br>(8.05) | 87<br>(100.0) |

표 3-21 법인설립 후 출자농가들이 얻는 이익

단위: 개소, %

| 구 분  | 소득증대          | 부수입획득        | 여유있는농업        | 기타            | 합계            |
|------|---------------|--------------|---------------|---------------|---------------|
| 영농조합 | 28<br>(41.79) | 6<br>(8.96)  | 16<br>(23.88) | 17<br>(25.37) | 67<br>(100.0) |
| 농업회사 | 5<br>(25.00)  | 2<br>(10.00) | 10<br>(50.00) | 3<br>(15.00)  | 20<br>(100.0) |
| 합 계  | 33<br>(37.93) | 8<br>(9.20)  | 22<br>(25.29) | 20<br>(22.99) | 87<br>(100.0) |

- 법인의 사업 운영은 사업 자금의 조달이나 경영관리 측면에서 대체로 건실하며, 특히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비하여 경영관리면에서 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자금은 주로 출자금에 의존하며(47.1%), 차입금에 대해서는 정부보조 보다는 사채나 금융기관의 융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33.3%).
- 경영상의 의사결정은 대표자가 독단하여 행하는 것 보다 구성원의 합의에 의하는 경우가 많으며(71.3%), 농업회사 보다는 영농조합이 더 많이 합의제를 채택하고 있음.
- 법인은 독립된 사무실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으며(69.0%), 특히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사무실 용도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80%에 달함.

- 조사된 농업법인은 대체로 경영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체적으로 부기기장 수준은 10.3%만이 기록을 하지 않으며, 기장양식으로 단식부기를 채용한 경우가 55.2%, 복식부기를 채용한 경우가 34.5%로 나타남.

표 3-22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단위: 개소, %

| 구 분  | 출자금           | 정부보조         | 비농민출자       | 사채·금융기관       | 기타           | 합계            |
|------|---------------|--------------|-------------|---------------|--------------|---------------|
| 영농조합 | 40<br>(59.70) | 4<br>(5.97)  | 2<br>(2.99) | 17<br>(25.37) | 4<br>(5.97)  | 67<br>(100.0) |
| 농업회사 | 4<br>(20.00)  | 2<br>(10.00) | 0<br>(0.00) | 12<br>(60.00) | 2<br>(10.00) | 20<br>(100.0) |
| 합 계  | 41<br>(47.13) | 6<br>(6.90)  | 2<br>(2.30) | 29<br>(33.33) | 6<br>(6.90)  | 87<br>(100.0) |

표 3-23 사업상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단위: 개소, %

| 구 분  | 대표자 결정        | 구성원 합의        | 두가지 절충        | 합계            |
|------|---------------|---------------|---------------|---------------|
| 영농조합 | 8<br>(11.94)  | 50<br>(74.63) | 9<br>(13.43)  | 67<br>(100.0) |
| 농업회사 | 4<br>(20.00)  | 12<br>(60.00) | 4<br>(20.00)  | 20<br>(100.0) |
| 합 계  | 12<br>(13.79) | 62<br>(71.26) | 13<br>(14.94) | 87<br>(100.0) |

표 3-24 법인의 독립된 사무실 유무

단위: 개소, %

| 구 분  | 대여한 건물        | 건물 소유함        | 사무실 없음        | 합계            |
|------|---------------|---------------|---------------|---------------|
| 영농조합 | 12<br>(17.91) | 32<br>(47.76) | 23<br>(34.33) | 67<br>(100.0) |
| 농업회사 | 0<br>(0.00)   | 16<br>(80.00) | 4<br>(20.00)  | 20<br>(100.0) |
| 합 계  | 12<br>(13.79) | 48<br>(55.17) | 27<br>(31.03) | 87<br>(100.0) |

표 3-25 경영기록의 유지

단위: 개소, %

| 구 분  | 기록안함         | 단식부기 기장       | 복식부기 기장       | 합계            |
|------|--------------|---------------|---------------|---------------|
| 영농조합 | 7<br>(10.45) | 37<br>(55.22) | 23<br>(34.33) | 67<br>(100.0) |
| 농업회사 | 2<br>(10.00) | 11<br>(55.00) | 7<br>(35.00)  | 20<br>(100.0) |
| 합 계  | 9<br>(10.34) | 48<br>(55.17) | 30<br>(34.48) | 87<br>(100.0) |

-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의견이 55.2%인 반면에 축소지향형은 12.6%로 나타났으며, 사업운영에 있어서는 자금 부족이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 결과, 현재도 정책자금의 상환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정책자금의 상환도 낙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표 3-26 향후 법인의 운영 계획

단위: 개소, %

| 구 분  | 현상유지          | 규모축소          | 규모확대          | 합계            |
|------|---------------|---------------|---------------|---------------|
| 영농조합 | 17<br>(25.37) | 6<br>(8.96)   | 44<br>(65.67) | 67<br>(100.0) |
| 농업회사 | 11<br>(55.00) | 5<br>(25.00)  | 4<br>(20.00)  | 20<br>(100.0) |
| 합 계  | 28<br>(32.18) | 11<br>(12.64) | 48<br>(55.17) | 87<br>(100.0) |

표 3-27 법인 발전에 제약이 되는 요인

단위: 개소, %

| 구 분  | 농지부족          | 자금부족          | 인력부족          | 경영능력취약       | 기타            | 합계            |
|------|---------------|---------------|---------------|--------------|---------------|---------------|
| 영농조합 | 6<br>(8.96)   | 40<br>(59.70) | 5<br>(7.46)   | 8<br>(11.94) | 8<br>(11.94)  | 67<br>(100.0) |
| 농업회사 | 6<br>(30.00)  | 6<br>(30.00)  | 5<br>(25.00)  | 0<br>(0.00)  | 3<br>(15.00)  | 20<br>(100.0) |
| 합 계  | 12<br>(13.79) | 46<br>(52.87) | 10<br>(11.49) | 8<br>(9.20)  | 11<br>(12.64) | 87<br>(100.0) |

표 3-28 정책자금의 상환 능력

단위: 개소, %

| 구 분  | 기한내<br>상환가능   | 현재는가능<br>향후불투명 | 현재불투명하나<br>개선된다면가능 | 장래가 불투명,<br>적기상환 불가능 | 기타            | 합계            |
|------|---------------|----------------|--------------------|----------------------|---------------|---------------|
| 영농조합 | 15<br>(22.39) | 3<br>(4.48)    | 25<br>(37.31)      | 12<br>(17.91)        | 12<br>(17.91) | 67<br>(100.0) |
| 농업회사 | 4<br>(20.00)  | 4<br>(20.00)   | 1<br>(5.00)        | 10<br>(50.00)        | 1<br>(5.00)   | 20<br>(100.0) |
| 합 계  | 19<br>(21.84) | 7<br>(8.05)    | 26<br>(29.89)      | 22<br>(25.29)        | 13<br>(14.94) | 87<br>(100.0) |

표 3-29 농업법인의 발전 방향

단위: 개소, %

| 구 분  | 생산공동체로서<br>독립적 사업화 | 출자농가를 돕고<br>소득향상에 기여 | 지역농업의<br>발전에 기여 | 기타          | 합계            |
|------|--------------------|----------------------|-----------------|-------------|---------------|
| 영농조합 | 6<br>(8.96)        | 8<br>(11.94)         | 51<br>(76.12)   | 2<br>(2.99) | 67<br>(100.0) |
| 농업회사 | 4<br>(20.00)       | 2<br>(10.00)         | 14<br>(70.00)   | 0<br>(0.00) | 20<br>(100.0) |
| 합 계  | 10<br>(11.49)      | 10<br>(11.49)        | 65<br>(74.71)   | 2<br>(2.30) | 87<br>(100.0) |

- 농업법인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개별농가나 구성원의 소득 증대 보다는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것은 조사된 농업법인의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농업경영을 유지하면서 별개의 사업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부대수입을 획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현실적으로 농업법인이 개별농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협업경영체 보다는 개별농가를 보완하는 경영체로서의 육성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제 4 장

# 농업법인 운영의 사례분석

## 1. 법인의 구성과 조직

- 1997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업법인 중에서 지역 및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영농조합법인 23개소와 농업회사법인 11개소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경영실태를 파악함.
- 조사한 영농조합법인 중에서 생산(농업경영)형 법인은 11개소, 가공형 법인과 유통형 법인은 각각 6개소씩임.
- 조사한 농업법인의 설립 및 구성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구성원 자격으로는 개별경영의 사업 동질성 및 인간관계를 중시하여 출자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조합원(출자자) 수는 설립당시와 변동없이 현상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합원(출자농가)와 법인과의 관계는 생산조합인 경우에 협업경영체 형태인 반면에, 가공현이나 유통형인 경우에는 별개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임.

표 4-1 조사법인의 유형과 사업내용

단위: 개소, %

| 구 분            |     | 세 부 내 용                                                                                                        | 법인수 | 비율    |
|----------------|-----|----------------------------------------------------------------------------------------------------------------|-----|-------|
| 영농<br>조합<br>법인 | 생산형 | 시설채소(2), 한우, 양계, 임산물(표고,팽이 2), 특용작물(영지), 채소육묘, 화훼, 자재(농약 등)                                                    | 11  | 32.4  |
|                | 가공형 | 주류(옥선주), 장류(막장,고추장,된장), 임산물(도토리전분 등), 기타(꽃감), 특용작물(인삼청과), 채소(김치)                                               | 6   | 17.6  |
|                | 유통형 | 과실(배), 직판장(돼지,한우 2), 집하장(배,단감,사과2),                                                                            | 6   | 17.6  |
|                | 소계  |                                                                                                                | 23  | 67.6  |
| 농업회사<br>법인     |     | 수도작위탁(11), 도정공장(5), 직판장(1), 논보리재배(1), 한과생산(1), 한우사육(1), 메기양식(1), 벚짚곤포(1), 보리수확(1), 기타포장판매(2 : 옥수수, 도라지, 배, 잡곡) | 11  | 32.4  |
| 계              |     |                                                                                                                | 34  | 100.0 |

주: KREI, 사례조사 결과(1997.4~8)에 의함. 이하의 표에서 같음.

표 4-2 조합원(출자자)의 성격

단위: 개소

| 구분                     | 합 계                   | 영농조합법인              |                                              |                       | 농업회사법인                |
|------------------------|-----------------------|---------------------|----------------------------------------------|-----------------------|-----------------------|
|                        |                       | 생 산 형               | 가 공 형                                        | 유 통 형                 |                       |
| 조합원<br>농가와<br>관계       | 협업경영체(14)             | 협업경영체(6)            | 별개 사업체(3)                                    | 공동추진(6)               | 협업경영체(7)              |
|                        | 공동추진(12)              | 별개사업체(3)            | 공동추진(2)                                      |                       | 공동추진(2)               |
|                        | 별개 사업체(8)             | 공동추진(2)             | 협업경영체(1)                                     |                       | 별개사업체(2)              |
| 조합원<br>수의<br>변동        | 현상유지(14)              | 현상유지(6)             | 현상유지(5)                                      | 현상유지(3)               | 현상유지(6)               |
|                        | 축소 (5)                | 축소 (3)              | 증가(1)                                        | 축소 (2)                | 축소 (4)                |
|                        | 증가(4)                 | 증가 (2)              |                                              | 증가 (1)                |                       |
| 조합원<br>수가<br>축소된<br>사유 | 사업추진에 대한<br>의견대립(5)   | 사업추진에 대한<br>의견대립(2) | 기타 (1)                                       | 개별영농에 전<br>념하기 위해 (1) | 사업추진에 대한<br>의견대립 (3)  |
|                        | 개별영농에 전념<br>하기 위하여(3) | 사업성과 부진<br>(1)      | -사업확대로 조합원들의 담보<br>가 증가됨에<br>다른 지불능력<br>의 부족 | 기타 (1)                | 개별영농에 전<br>념 하기 위해(2) |
|                        | 사업성과 부진(1)<br>기타(3)   |                     |                                              | -타작목만 가입              |                       |

주: 조합원농가와의 관계에서 공동추진이란 개별농가의 생산과 병행하는 것을 의미함.

표 4-3 조합원(출자자) 선정시 착안점

단위: 개소

| 합 계                                         | 영농조합법인                                    |                      |                     | 농업회사법인               |
|---------------------------------------------|-------------------------------------------|----------------------|---------------------|----------------------|
|                                             | 생산형                                       | 가공형                  | 유통형                 |                      |
| 사업 동질성(19)<br>인간관계(13)<br>자금력(1)<br>영농능력(1) | 사업 동질성(5)<br>인간관계(4)<br>자금력(1)<br>영농능력(1) | 사업 동질성(4)<br>인간관계(2) | 사업동질성(5)<br>인간관계(1) | 인간관계(6)<br>사업 동질성(5) |

- 출자자나 구성원을 확대하고 있는 법인은 적극적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면서 대표자와의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추가 영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두촌영농조합 : 법인의 대표자가 표고버섯 재배를 20년 이상 계속하면서 인근 농가에게 기술을 전파하고, 고교 선후배인 7명의 후계자 중심으로 법인을 결성하였으며, 사업이 안정되면서 후계자 3명을 추가로 영입함.
- 매배위탁영농회사 : 1991년에 벼농사 위탁영농을 위하여 5명이 설립하였으나, 1996년에 도정공장과 연계하여 한과가공사업을 신규로 도입하면서 자본력이 있는 2명의 주민을 참여시킴.
- 반면에, 구성원이 감소하고 있는 법인은 대부분 사업실적이 저조하게 되면서 구성원간의 불화로 인한 탈퇴에 기인함.
- 여주영농조합 : 공동육묘사업을 위하여 7명이 법인을 결성하였으나, 경영성과 부진으로 인한 조합원간의 불화가 시작되면서 출자자 모두가 탈퇴(출자금 반환)하여 현재는 대표자 1인 경영으로 전환됨.
- 늘푸른위탁영농회사 : 대표자는 인근의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한 대표자였으나 출자자들의 불화로 인해 법인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자, 기존 회사를 탈퇴하고 새로이 젊은 후계자 5명을 규합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함. 특히 비농업분야에 종사하는 2명을 가입시켜 자본력을 확충함.

- 산정위탁영농회사 : 위탁영농에 의한 구성원의 부대수입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나, 지역내에 수탁작업 물량이 한정되어 현실적으로 사업 실적이 없는 명목상의 법인임.
- 영농조합의 경우에 준조합원을 활용함으로써 사업규모 및 사업영역을 넓히면서 경영을 활성화하고 있는 성공사례가 발견됨.
- 동시곶감영농조합 : 정조합원 13명외에 123명이 준조합원으로 가입. 조합원은 13명이 총 1억3천만원을 출자하고, 준조합원은 평균 5만원을 출자. '95년에 감작목반원들을 준조합원으로 편입하여 조합원 생산량의 100%, 준조합원 생산량의 30%를 가공 처리함.
- 상주영농조합(팽이버섯) : 정조합원 5명외에 12명의 준조합원을 가입, 조합원 5인이 1인당 2400만원씩 1억2천만원출자, 준조합원 12명이 총 4700만원 출자. 준조합원도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매일 노동력을 출역하도록 함.
- 음성인삼영농조합 : 조합원 8명외에 준조합원 406명을 가입. 정조합원은 총 3억 500만원의 출자금을 출자한데 비해, 준조합원은 총 7490만원을 출자. 준조합원은 생산된 인삼을 소속 조합에 일정량을 우선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이익배당시 배당금을 지불함.

표 4-3 준조합원의 활용사례

| 합 계                                    | 생 산 형                                                                                                                                     | 가 공 형                                                                                                                                                   |
|----------------------------------------|-------------------------------------------------------------------------------------------------------------------------------------------|---------------------------------------------------------------------------------------------------------------------------------------------------------|
| 시장교섭력제고(2)<br>자본출자확대 (2)<br>원료농산물확보(2) | 상주영농조합<br>-자본출자확대(12명,4700만원,<br>출자금의 28.1%)<br>-생산량확대를 통한 시장교섭<br>력제고<br>아리랑영농조합<br>-생산량확대를 통한 시장교섭<br>력제고(8명이 8800평, 총재배<br>면적의 61.3%)) | 동시곶감영농조합<br>-생산의 안정을 위한 원료농<br>산물의 확보(출자금의 5%이<br>내, 준조합원 생산량의 30%<br>구매)<br>음성인삼영농조합<br>-자본출자확대(406명,<br>7490만원,출자금의 20%)<br>-생산의 안정을 위한 원료농<br>산물의 확보 |

## 2. 출자 및 자산운영

- 농업법인에 대한 출자는 주로 현금 출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물 출자로는 농지, 시설부지, 대동물, 농기계장비 등이 출자됨.
- 영농조합법인도 대체로 현금 출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형 법인의 경우에는 농지출자가 미미한 수준임.
- 구성원의 출자 이외에 정부지원에 의하여 자산을 축적하고 있음. 조사 법인의 영농자산은 15억원 수준에 달며, 이 중에서 정부의 지원은 4억5천만원 정도로 파악됨.
-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대부분 정부지원 사업을 수혜받았음. 특히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생산유통종합지원사업을 통한 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가공사업 지원에 의한 가공공장 설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농기계 구입자금 이외에 청결미가공공장과 쌀식품가공공장 등을 설치함.

표 4-4 사업유형별 평균 출자내역

| 구분     | 출자내역               |                    |                     | 현물내역                           |                               |                                           |                   |
|--------|--------------------|--------------------|---------------------|--------------------------------|-------------------------------|-------------------------------------------|-------------------|
|        | 현금                 | 현물                 | 계                   | 농지                             | 시설부지                          | 대동물                                       | 대농구기타             |
| 영농조합법인 | 38,303만원<br>(58.8) | 26,843만원<br>(41.2) | 65,145만원<br>(100.0) | 3,209평<br>(4,623만원)<br>(17.2%) | 472.7평<br>(19,735만)<br>(73.5) | 한우1.8두<br>(327만원)<br>(1.2)                | 2,156만원<br>(8.0)  |
|        | 20,998만원<br>(84.0) | 4,012만원<br>(16.0)  | 25,010만원<br>(100.0) |                                | 1,250평<br>(1,845만원)<br>(46.0) |                                           | 2,167만원<br>(54.0) |
|        | 5,393만원<br>(30.2)  | 12,483만원<br>(69.8) | 17,876만원<br>(100.0) | 250평<br>(750만원)<br>(6.0)       |                               | 한우25두<br>(6,500만원)<br>돼지288두<br>(4,083만원) | 1,150만원<br>(9.2)  |
| 농업회사법인 | 6,313만원<br>(50.5)  | 6,182만원<br>(49.5)  | 12,494만원<br>(100.0) | 700평<br>(1250만원)<br>(25.1)     | 83.3평<br>(813만원)<br>(16.3)    |                                           | 2,926만원<br>(58.6) |
| 총계평균   | 20,328만원<br>(59.2) | 14,005만원<br>(40.8) | 34,334만원<br>(100.0) | 2,108만원<br>(15.1)              | 7,570만원<br>(54.1)             | 2,164만원<br>(15.5)                         | 2,162만원<br>(15.4) |

표 4-5 정부지원 수혜실적

| 구분     | 법인명  | 자본 및 부채(백만원)      |                  |                   | 정부지원금액                                                 |
|--------|------|-------------------|------------------|-------------------|--------------------------------------------------------|
|        |      | 부채                | 자본               | 합계                |                                                        |
| 영농조합법인 | 총원과수 | 756.4             | 133.6            | 890               | 계 7억 2400만원(보조 45250만, 융자 27150만)                      |
|        | 여주   | 358.8             | 871.9            | 1230.7            | 계 6억5700만(보조 43800만, 융자 21900만)                        |
|        | 평택양계 | 7657.7            | 2831.6           | 10489.2           | 계 21억 7880만원(보조 5억, 융자 16억 7880만)                      |
|        | 평균   | 2924.3<br>(69.6%) | 1279.0<br>(30.4) | 4203.3<br>(100.0) | 계 11억 8660만원(보조 4억 6350만원(39.1%), 융자 7억 2310만원(60.9%)) |
|        | 옥선   | 610               | 110.9            | 720.9             | 계 1억 8400만원(보조 11500만, 융자 6900만)                       |
|        | 평택이화 | 432.5             | 70.3             | 502.8             | 계 2억 7850만원(보조 12000만, 융자 15850만)                      |
|        | 평균   | 521.3<br>(85.2%)  | 90.6<br>(14.8)   | 611.9<br>(100.0)  | 계 2억 3125.0만원(보조 1억 1750만원(50.8%), 융자 1억 1375만원(49.2)) |
|        | 풍성   | 1351.3            | 74.9             | 1426.1            | 계 4억 6140만원(보조 46140만)                                 |
|        | 달래강  | 126.1             | 356.7            | 482.8             | 계 8600만원(융자 8600만)                                     |
|        | 평균   | 738.7<br>(77.4)   | 215.8<br>(22.6)  | 954.5<br>(100.0)  | 계 2억 7370만(보조 2억 3070만(84.3%), 융자 4300만(15.7))         |
| 농업회사법인 | 청북   | 1,260             | 255              | 1,515             | 계 2억 4260만원(보조 480만, 융자 2억 3780만)                      |
|        | 오성   | 1,150             | 447              | 1,597             | 계 5억 7백만원(보조 4억 6400만, 융자 4300만)                       |
|        | 매배   | 250               | 250              | 500               | 계 3억 5800만원(보조 7800만, 융자 2억 8천만)                       |
|        | 금호   | 130               | 150              | 280               | 계 1억 2300만원(보조 5천만, 융자 7300만)                          |
|        | 점동   | 123               | 188              | 399               | 계 2억 70만원(보조 8290만, 융자 1억 1780만)                       |
|        | 눌푸른  | 99                | 124              | 223               | 계 1억 2360만원(보조 5000만, 융자 7360만)                        |
|        | 광활   | 56                | 223              | 279               | 계 1억 5700만원(보조 7600만, 융자 8100만)                        |
|        | 평균   | 438.3<br>(64.0)   | 233.9<br>(36.0)  | 684.7<br>(100.0)  | 계 2억 4455.7만원(보조 1억 1510만(47.1%), 융자 1억 2945.7만(52.9)) |
| 평 균    |      | 1025.8<br>(69.9)  | 434.8<br>(30.1)  | 1466.8<br>(100.0) | 계 4억 4868.6만(보조 2억 0661.4만(46.0%), 융자 2억4207.2만(54.0)) |

- 농업법인의 자산 운영면을 살펴보면,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고정자산에 재투자하여 설립 당시에 비하여 대체로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체로 총자본 회전률은 낮으나,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법인일수록 고정자산의 회전률이나 총자본 회전률을 높게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 사례법인의 경영안정성 지표

단위: %

| 구 분      | 자기자본<br>비율 | 고정자산<br>비율 | 유동자산<br>비율 | 부채비율 | 고정자산<br>회전율 | 총자본<br>회전율 |
|----------|------------|------------|------------|------|-------------|------------|
| 서석 '94   | 18.3       | 351.9      | 68.7       | 4.4  | 0.00        | 0.00       |
| '95      | 12.1       | 512.2      | 90.3       | 7.2  | 0.03        | 0.02       |
| 신림청송 '94 | 40.6       | 195.6      | -          | 1.4  | 0.00        | 0.00       |
| '95      | 62.7       | 143.6      | 96.0       | 0.5  | 0.00        | 0.00       |
| '96      | 52.3       | 188.4      | 1.7        | 0.9  | 0.00        | 0.00       |
| 풍성 '94   | 100.0      | 20.0       | -          | 0.0  | 0.00        | 0.00       |
| '95      | 9.2        | 1000.6     | 8.4        | 9.8  | 0.46        | 0.43       |
| '96      | 5.2        | 956.7      | 52.4       | 18.0 | 1.21        | 0.60       |
| 함창이안 '95 | 42.0       | 85.4       | -          | 1.3  | 0.36        | 0.13       |
| '96      | 68.4       | 87.6       | -          | 0.4  | 0.24        | 0.14       |
| 충원과수 '95 | 37.7       | 81.4       | 101.2      | 1.6  | 1.35        | 0.41       |
| '96      | 15.0       | 459.5      | 35.3       | 5.6  | 0.29        | 0.20       |
| 달래강 '95  | 66.0       | 36.7       | 456.1      | 0.5  | 5.61        | 1.36       |
| '96      | 73.8       | 36.3       | 878.5      | 0.3  | 5.24        | 1.40       |
| 여주 '95   | 77.7       | 127.5      | -          | 0.3  | 0.00        | 0.00       |
| '96      | 70.8       | 139.3      | 14.9       | 0.4  | 0.39        | 0.39       |
| 평택이화 '95 | 100.0      | 65.4       | -          | 0.0  | 0.00        | 0.00       |
| '96      | 13.9       | 511.3      | 38.8       | 6.1  | 0.21        | 0.15       |
| 평택양계 '95 | 30.2       | 302.0      | 747.2      | 2.3  | 0.00        | 0.00       |
| '96      | 26.9       | 353.5      | 404.3      | 2.7  | 0.47        | 0.45       |

### 3. 사업 운영과 경영수지

#### 3.1. 사업 운영

-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나 모두 조합원 또는 사원의 노동력을 근간으로 보조노동력을 고용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자가 전반적인 경영관리를 담당하고 사업별로는 담당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조합원 수가 많은 유통사업형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상근종사자 이외에는 총회에 참석하여 사업상의 의사결정을 하는 정도임.

- 개별영농과는 별도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특히 가공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출자농가는 원료 공급을 주로하여 약간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정도임.
- 농작업수탁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은 개별농가의 농작업도 실질적인 위탁작업으로 공동수행하고 이익을 배분함.
- 노동에 대한 보수는 작업시간에 따라서 실질임금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조합원 전원의 협업경영인 증평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작업 내용별로 다른 임금 체계를 채택하는 사례도 발견됨. 증평영농조합은 구성원들의 공동작업과 작업분담 체계를 확립하고 노동강도에 따른 보수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음(A급(4,5,9,10월): 35,000원/일, B급(3,6,7,8,11,12월): 30,000원/일, C급(1,2월) : 25,000원/일)
- 가공이나 유통사업을 위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생산물의 가공 또는 판매를 위한 독립사업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영남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 도토리와 칩을 이용한 전분가공을 주업으로 하며, 산지에서 가공을 담당하고 서울 등 대도시에 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우영농조합은 대부분 개별농가의 한우 사육을 기반으로하여 위탁도축을 실시하고, 여기서 생산된 지육을 자체브랜드화하여 판매하는 직판장 체제를 갖추고 있음.
  - 금호위탁영농회사는 벼농사 작업수탁을 위주로 설립된 법인이지만, 작업량이 축소되면서 대표자가 가공 및 판매사업을 위하여 별도로 2개소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함.
- 영농조합법인의 연간 매출액 규모는 유통형 법인이 상대적으로 크고 다음이 가공형 법인, 생산형 법인의 순임.
  - 판매 방법으로는 수시로 판매하는 사례가 많으며, 전량 주문판매나 계약판매하는 경우도 소수 발견됨.
  - 농업회사법인의 수입원은 영농대행에 의한 작업 수수료 보다는 정미소 운영을 통한 지대미 가공·판매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음.

표 4-7 판매실적 및 판매처별 평균비중

| 구 분            |    | 평균매출액        | 판 매 처 별 평 균 비 중 (%) |      |      |      |      |      |
|----------------|----|--------------|---------------------|------|------|------|------|------|
|                |    |              | 수출                  | 계통출하 | 중간상인 | 유통업체 | 공판장  | 직거래  |
| 영농<br>조합<br>법인 | 생산 | 34,967만원 (6) | 0.42                | 20.8 | 14.2 |      | 16.3 | 15.0 |
|                | 가공 | 44,834 (5)   |                     | 6.4  |      | 40.0 | 3.6  | 9.1  |
|                | 유통 | 166,500 (5)  |                     | 7.7  |      |      | 46.2 | 38.5 |
| 농업회사           |    | 150,472 (5)  |                     |      | 19.6 | 24.8 | 17.6 | 37.9 |
| 계              |    | 96,135만원(21) | 0.1                 | 8.7  | 8.5  | 16.2 | 20.9 | 25.1 |

주 : 1) ( )는 집계된 법인 수.

2) 농업회사법인의 판매처별 평균비중은 각항목별 매출액합계의 비율이고, 그 외에는 각항목별 판매비율의 단순평균임.

3) 농업회사법인의 경우는 전체 매출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위탁수수료를 제외하고, 시장판매가 가능한 품목의 매출액에 대한 것임.

표 4-8 조사법인의 거래방법별 판매비중

| 구분         |    | 거래방법별 평균비중 (%) |      |      |      |
|------------|----|----------------|------|------|------|
|            |    | 계              | 수시판매 | 주문판매 | 계약판매 |
| 영농조합<br>법인 | 생산 | 100.0          | 60.8 | 8.3  | 30.8 |
|            | 가공 | 100.0          | 45.0 | 28.5 | 26.5 |
|            | 유통 | 100.0          | 42.9 | 23.1 | 34.1 |
| 농업회사       |    | 100.0          | 26.7 | 60.6 | 12.7 |
| 계          |    | 100.0          | 43.9 | 30.1 | 26.0 |

주: 전량 계약판매인 법인은 두촌, 풍성, 자연영농조합임.

전량 주문판매인 법인은 옥선(옥선주), 함창이안(배,사과,자두, 복숭아).

표 4-9 농업회사법인의 수입원 구성('96)

단위 : 만원

| 구분 | 평 균<br>매출액     | 임 차<br>수 입 | 위탁수입     |          |         | 도정<br>수수료 | 지대미(청<br>결미)판매 | 기타    |
|----|----------------|------------|----------|----------|---------|-----------|----------------|-------|
|    |                |            | 완전<br>위탁 | 부분<br>위탁 | 소계      |           |                |       |
| 금액 | 13억4,089<br>만원 | 3,219      | 8,439    | 6,943    | 15,382  | 9,625     | 103,777        | 2,085 |
| 비중 | 100.0%         | 2.4        | (54.9)   | (45.1)   | (100.0) | 7.2       | 77.4           | 1.6   |

주 : 7개 농업회사의 집계 결과임.

### 3.2. 경영수지 분석

- 분석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익의 변동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나, 대체로 수입원이 한정되는데 비하여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관계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음.
- 영농조합이 농업회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익성 악화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 위탁영농 이외의 가공·판매사업이 경영수지 개선의 관건이 되고 있으나, 구매곡 확보 등 원료곡을 연중 안정되게 확보하는 것이 성공의 요인으로 지적됨.

표 4-10 영농조합법인의 수익성 변화

단위: 백만원, %

| 구분       | 수입     | 비용     | 순수익    | 순수익율   |
|----------|--------|--------|--------|--------|
| 치약 '94   | 137.5  | 134.5  | 3.0    | 2.1    |
| '95      | 11.4   | 11.1   | 0.3    | 2.6    |
| 풍성 '95   | 293.6  | 286.1  | 7.5    | 2.5    |
| '96      | 868.1  | 848.7  | 19.4   | 2.2    |
| 함창이안 '95 | 54.9   | 24.7   | 30.2   | 55.0   |
| '96      | 70.9   | 59.2   | 11.7   | 16.5   |
| 충원과수 '95 | 169.2  | 171.1  | -1.9   | -1.1   |
| '96      | 178.9  | 198.4  | -19.5  | -10.8  |
| 달래강 '95  | 673.6  | 670.8  | 2.8    | 0.4    |
| '96      | 679.8  | 649.3  | 30.5   | 4.4    |
| 청북위탁 '95 | 3903   | 3761.2 | 141.8  | 3.6    |
| '96      | 5167.0 | 5030.7 | 136.3  | 2.6    |
| 평택이화 '95 | 0      | 2.6    | -2.6   |        |
| '96      | 77.3   | 209.3  | -132.0 | -170.7 |
| 합 계 '95  | 5231.8 | 5051.0 | 180.8  | 3.5    |
| '96      | 7053.4 | 7006.7 | 46.7   | 0.7    |
| 증 감 율    | 34.8%  | 38.7   | -74.2  |        |

주: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8개 법인의 전년도와 기준년도의 수익성을 살펴보면, '95년은 평균 3.5%의 순수익율을 나타내었는데, '96년에는 전년대비 -74.2%나 감소하여 순수익율은 0.7%를 나타냄. 이는 수입이 전년대비 34.8% 증가하였는데 비용은 38.7%로 수입보다 더 증가하였기 때문임.

표 4-11 농업회사법인의 수익성 변화

| 구 분      | 수 입           | 비 용       | 순 수 익    | 순수익율(%) |
|----------|---------------|-----------|----------|---------|
| 청북       | '95 39억 3백만   | 37억 6120만 | 1억 4180만 | 3.6     |
|          | '96 51억 6700만 | 50억 3070만 | 1억 3630만 | 2.6     |
| 매배       | '95 3억 5천만    | 2억 9천만    | 6천만      | 17.1    |
|          | '96 4억        | 3억 2천만    | 8천만      | 25.0    |
| 금호       | '95 1억 7천만    | 1억 5천만    | 2천만      | 17.8    |
|          | '96 2억        | 1억 7천만    | 3천만      | 15.0    |
| 점동       | '95 1억 3천만    | 1억 250만   | 2750만    | 21.2    |
|          | '96 1억 5571만  | 1억 4022만  | 1549만    | 9.9     |
| 늘푸른      | '95 9480만     | 7536만     | 1944만    | 20.5    |
|          | '96 2억 1587만  | 1억 8122만  | 3465만    | 19.1    |
| 삼우       | '95 1억        | 7천만       | 3천만      | 30.0    |
|          | '96 2억        | 1억 1천만    | 9천만      | 45.0    |
| 대창       | '95 1억 1579만  | 4400만     | 7179만    | 62.0    |
|          | '96 1억 3080만  | 7853만     | 5227만    | 40.0    |
| 합 계      | '95 48억 6359만 | 44억 9306만 | 3억 7053만 | 7.6%    |
|          | '96 52억 9888만 | 48억 2882만 | 4억 7006만 | 8.9%    |
| 증 감 율(%) | 8.9           | 7.5       | 26.9     |         |

주: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7개 위탁영농회사의 전년도와 기준년도의 수익성을 살펴보면, '95년은 평균 7.6%의 순수익율을 나타내었는데, '96년에는 8.9%를 나타냄. 이는 수입의 증가율이 비용의 증가율을 초과하였기 때문임.

### 3.3. 경영관리 상황

- 경영관리에 대하여 자원관리, 노무관리, 기계·시설관리, 이익관리, 판매관리, 자금관리 등으로 나누어 실태를 파악한 결과, 대체로 경영관리에 충실한 것으로 나타남.
- 자원관리를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재배계획, 작업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노무관리에서도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나 노동시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계나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전담자 확보 및 이용을 적정화가 추구되며, 감가상각처리도 실시하고 있음.

표 4-12 경영관리 수법의 실천상황

단위: 개소, %

| 구분                  | 품목                  | 경영관리 적합성 |    |       | 생산 | 가공 | 유통 | 위탁<br>영농 |
|---------------------|---------------------|----------|----|-------|----|----|----|----------|
|                     |                     | 실시여부     | 빈도 | 구성비   |    |    |    |          |
| 자원<br>관리            | 토지이용계획              | 한다       | 16 | 64.0  |    |    |    | 10       |
|                     |                     | 안한다      | 9  | 36.0  |    |    |    |          |
|                     |                     | 계        | 25 | 100.0 |    |    |    | 10       |
|                     | 재배계획                | 한다       | 21 | 87.5  |    |    |    | 10       |
|                     |                     | 안한다      | 3  | 12.5  |    |    |    |          |
|                     |                     | 계        | 24 | 100.0 |    |    |    | 10       |
|                     | 작업계획                | 한다       | 28 | 96.6  |    |    |    | 10       |
|                     |                     | 안한다      | 1  | 3.4   |    |    |    |          |
|                     |                     | 계        | 29 | 100.0 |    |    |    | 10       |
| 노무<br>관리            | 역할분담                | 한다       | 29 | 93.5  |    |    |    | 9        |
|                     |                     | 안한다      | 2  | 6.5   |    |    |    | 1        |
|                     |                     | 계        | 31 | 100.0 |    |    |    | 10       |
|                     | 출역계획                | 한다       | 28 | 90.3  |    |    |    | 10       |
|                     |                     | 안한다      | 3  | 9.7   |    |    |    |          |
|                     |                     | 계        | 31 | 100.0 |    |    |    | 10       |
|                     | 작업시간관리              | 한다       | 29 | 93.5  |    |    |    | 10       |
|                     |                     | 안한다      | 2  | 6.5   |    |    |    |          |
|                     |                     | 계        | 31 | 100.0 |    |    |    | 10       |
| 기계<br>·<br>시설<br>관리 | 전담자확보               | 있다       | 19 | 59.4  | 8  | 4  | 1  | 6        |
|                     |                     | 없다       | 13 | 40.6  | 3  | 2  | 4  | 4        |
|                     |                     | 계        | 32 | 100.0 | 11 | 6  | 5  | 10       |
|                     | 이용의 적정성<br>(시설의가동율) | 50%미만    | 11 | 34.4  | 3  | 3  | 3  | 2        |
|                     |                     | 50%이상    | 21 | 65.6  | 8  | 3  | 2  | 8        |
|                     |                     | 계        | 32 | 100.0 | 11 | 6  | 5  | 10       |
|                     | 감가상각처리              | 한다       | 28 | 93.3  |    |    |    | 9        |
|                     |                     | 안한다      | 2  | 6.7   |    |    |    |          |
|                     |                     | 계        | 30 | 100.0 |    |    |    | 9        |
| 이익<br>관리            | 회계담당자               | 있다       | 12 | 36.4  | 7  | 2  | 1  | 2        |
|                     |                     | 없다       | 21 | 63.6  | 4  | 4  | 5  | 8        |
|                     |                     | 계        | 33 | 100.0 | 11 | 6  | 6  | 10       |
|                     | 회계처리방법              | 부기기장     | 8  | 24.2  | 5  | 2  | 1  |          |
|                     |                     | 기타(위탁)   | 22 | 66.7  | 5  | 3  | 4  | 10       |
|                     |                     | 현금출납     | 3  | 9.1   | 1  | 1  | 1  |          |
|                     |                     | 계        | 33 | 100.0 | 11 | 6  | 6  | 10       |

|          |                  |        |    |       |  |  |  |   |
|----------|------------------|--------|----|-------|--|--|--|---|
| 판매<br>관리 | 거래선              | 2개     | 6  | 20.0  |  |  |  |   |
|          |                  | 3-5개   | 8  | 26.7  |  |  |  |   |
|          |                  | 6개이상   | 16 | 53.3  |  |  |  | 9 |
|          |                  | 계      | 30 | 100.0 |  |  |  | 9 |
|          | 거래방법<br>(계약거래비율) | 30%미만  | 1  | 9.1   |  |  |  |   |
|          |                  | 30-60% | 4  | 36.4  |  |  |  | 3 |
|          |                  | 60%이상  | 6  | 54.5  |  |  |  |   |
|          |                  | 계      | 11 | 100.0 |  |  |  | 3 |
|          |                  | 평균비율   |    | 60.0  |  |  |  |   |
| 자금<br>관리 | 장기자금             | 한다     | 27 | 96.4  |  |  |  | 9 |
|          |                  | 안한다    | 1  | 3.6   |  |  |  |   |
|          |                  | 계      | 28 | 100.0 |  |  |  | 9 |
|          | 단기자금             | 한다     | 23 | 82.1  |  |  |  | 8 |
|          |                  | 안한다    | 5  | 17.9  |  |  |  | 1 |
|          |                  | 계      | 28 | 100.0 |  |  |  | 9 |
|          | 단기자금<br>외부의존도    | 없다     | 5  | 17.9  |  |  |  | 4 |
|          |                  | 30%미만  | 4  | 14.3  |  |  |  |   |
|          |                  | 30-60% | 18 | 64.3  |  |  |  | 5 |
|          |                  | 60%이상  |    |       |  |  |  |   |
|          |                  | 기타     | 1  | 3.6   |  |  |  |   |
|          |                  | 계      | 28 | 100.0 |  |  |  | 9 |

○ 특히 기업적 경영기법으로 회계처리, 판매관리, 자금관리 등을 행하는 경우도 많음.

- 회계담당자를 지정하고 부기를 기장하고 있으며, 특히 전담자에게 위탁하여 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됨. 영남영농조합, 서석영농조합 등은 현금출납상황만을 기재하여 세무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회계처리를 일임하는 사례임.
- 판매관리 면에서 다수의 거래선을 확보하고 계약판매의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음. 콩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서석영농조합은 식품박람회 출품을 비롯하여 매스컴을 통한 홍보, 대도시 아파트의 부녀회 등을 통한 판매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사례임.

4. 지역농업과의 관계

- 지역농협과는 대체로 원활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경제 사업에 대한 불만은 상존하고 있음.
  - 신용사업은 조사 법인의 84%가 이용하면서 불만족이 22% 정도로 낮게 나타남.
  - 구매사업에 대해서는 조사 법인의 58%가 이용하는 반면에, 판매사업은 52%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구매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53%로 높은 편이지만, 반면에 판매사업에 대한 불만족도는 47%로 높게 나타남.
- 지역 주민과는 상당히 유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농업법인의 시설이나 기능을 이용하거나 취업기회 제공 및 지역행사의 참여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4-13 지역농협의 사업별 이용현황 및 만족도

단위: 개소, %

| 구분   | 이용현황 |            |    |    |    |    |  | 만족여부 |            |    |    |    |    |  |
|------|------|------------|----|----|----|----|--|------|------------|----|----|----|----|--|
|      | 내용   | 계 (%)      | 생산 | 가공 | 유통 | 위탁 |  | 내용   | 계 (%)      | 생산 | 가공 | 유통 | 위탁 |  |
| 신용사업 | 이용함  | 27 (84.4)  | 10 | 4  | 5  | 8  |  | 만족   | 9 (33.3)   | 2  |    | 4  | 3  |  |
|      | 이용안함 | 5 (15.6)   | 1  | 2  | 1  | 1  |  | 보통   | 12 (44.4)  | 5  | 3  | 1  | 3  |  |
|      | 계    | 32 (100.0) | 11 | 6  | 6  | 9  |  | 불만족  | 6 (22.2)   | 3  | 1  |    | 2  |  |
|      |      |            |    |    |    |    |  | 계    | 27 (100.0) | 10 | 4  | 5  | 8  |  |
| 구매사업 | 이용함  | 19 (57.6)  | 5  | 3  | 3  | 8  |  | 만족   | 9 (52.9)   | 3  | 2  | 2  | 2  |  |
|      | 이용안함 | 14 (42.4)  | 6  | 3  | 3  | 2  |  | 보통   | 6 (35.3)   | 1  | 1  | 1  | 3  |  |
|      | 계    | 33 (100.0) | 11 | 6  | 6  | 10 |  | 불만족  | 2 (11.8)   | 1  |    |    | 1  |  |
|      |      |            |    |    |    |    |  | 계    | 17 (100.0) | 5  | 3  | 3  | 6  |  |
| 판매사업 | 이용함  | 16 (48.5)  | 5  | 4  | 4  | 3  |  | 만족   | 5 (33.3)   | 3  |    | 1  | 1  |  |
|      | 이용안함 | 17 (51.5)  | 6  | 2  | 2  | 7  |  | 보통   | 3 (20.0)   |    | 3  |    |    |  |
|      | 계    | 33 (100.0) | 11 | 6  | 6  | 10 |  | 불만족  | 7 (46.7)   | 1  | 1  | 3  | 2  |  |
|      |      |            |    |    |    |    |  | 계    | 15 (100.0) | 4  | 4  | 4  | 3  |  |

표 4-14 지역주민과의 협력 활동수행

| 구 분         | 지 역 활 동 여 부 |     |         |
|-------------|-------------|-----|---------|
|             | 내용          | 법인수 | (비율 %)  |
| 법인시설 및 기능활용 | 한다          | 18  | (58.1)  |
|             | 안한다         | 13  | (41.9)  |
|             | 계           | 31  | (100.0) |
| 취업기회 제공     | 한다          | 26  | (83.9)  |
|             | 안한다         | 5   | (16.1)  |
|             | 계           | 31  | (100.0) |
| 자금융통        | 한다          | 2   | (6.5)   |
|             | 안한다         | 29  | (93.5)  |
|             | 계           | 31  | (100.0) |
| 지역행사 참여     | 한다          | 28  | (90.3)  |
|             | 안한다         | 3   | (9.7)   |
|             | 계           | 31  | (100.0) |

- 참고로, 지역농업의 추진주체로 설립된 「무안군 양념채소류 유통사업 영농조합」의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설립 경과

- 농민운동만으로 정부수매 요구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1989년 생산자조합을 통한 자주적 협동운동을 병행하기로 결정.
- 1993년부터 양파·마늘의 품목별 전문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나, 정부의 인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영농조합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선회.
- 1993년 12월초에는 150여명의 조합원으로 산하 11개 영농조합을 결성하고 연합회 형식의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여 법인등기를 완료.
- 1994년 정부지원사업인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유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1995년과 1996년에 추가 수혜받음.
- 1997년 현재 산하 21개 영농조합법인과 584명의 조합원을 갖는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출자금은 7억2100만원에 이름.

표 4-15 무안군 영농조합연합회의 법인 구성

| 법 인 명      | 조합원수(명) | 법 인 명      | 조합원수(명) |
|------------|---------|------------|---------|
| 무 안 영농조합   | 15      | 해 운 영농조합   | 15      |
| 수 양 영농조합   | 21      | 두 동 영농조합   | 13      |
| 해제동부 영농조합  | 49      | 현 화 영농조합   | 45      |
| 운남제일 영농조합  | 28      | 동 산 영농조합   | 10      |
| 운 남 영농조합   | 15      | 호남호암 영농조합  | 24      |
| 몽 탄 영농조합   | 26      | 해제만풍 영농조합  | 48      |
| 송 정 영농조합   | 34      | 운남동암 영농조합  | 9       |
| 해제중부 영농조합  | 35      | 황 토 영농조합   | 16      |
| 용 정 영농조합   | 54      | 해제남부 영농조합  | 34      |
| 해제서부 영농조합  | 39      | 석 북 영농조합   | 5       |
| 무 안 읍 영농조합 | 49      | 계 (21개 조합) | 548     |

## (2) 정부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 ① 1994년도 양념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총사업비 32억6,800만원)

## - 농가생산지원사업

- 관수시설 : 46.68ha      66조합원에게 지원
- 비가림시설 : 20.2ha      61조합원에게 지원
- 건가시설 : 117동      117조합원에게 지원
- 공동육묘장 : 3개소      2,100평

- 공동시설 : 저온창고 400평, 선별장 164평, 집하장 205평을 건축하고 스페인과 독일로부터 최첨단 자동소포장기 도입함.

## ② 1995년도 농산물포장센터사업(총사업비 30억원)

## - 포장기계라인

- 규모 : 7억5천만원(설비업체 : 삼성항공, 샤프론코리아)
- 기계의 유형 : 국산, 독일산, 호주산

- 저온창고와 예냉시설 781평, 선별장 200평, 집하장 300평 등을 시설하여 양파 수출 등에 이용하고 있음.

③ 1996년도 양념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총사업비 94년도와 같음)

- 농가생산지원사업

- 관수시설 : 30ha            42조합원에게 지원
- 비가림시설 : 15ha        63조합원에게 지원
- 건가시설 : 167동        167조합원에게 지원
- 공동육묘장 : 8ha        9조합원에게 지원

- 공동시설 : 저온창고 200평, 집하장 120평, 프로그육묘장 500평, 육묘장관리실 50평, 교육장 140평, 간마늘시설 1동, 양파탈피기 1대, 양파이식기와 수확기 각각 1대씩을 설비.

(3) 사업운영 현황

표 4-16 무안영농조합법인의 사업수지(1996년)

단위 : 천원

| 구 분      |        | 비 용     |         | 수 익       |         | 조 수 익   |         |
|----------|--------|---------|---------|-----------|---------|---------|---------|
|          |        | 계 획     | 실 적     | 계 획       | 실 적     | 계 획     | 실 적     |
| 사업<br>손익 | 구 매    | 14,200  | 4,478   | 102,059   | 101,419 | 87,859  | 96,941  |
|          | 판 매    | 533,500 | 496,537 | 775,183   | 399,846 | 241,683 | △96,691 |
|          | 창 고    | 75,800  | 84,643  | 396,100   | 496,403 | 320,300 | 411,769 |
|          | 계      | 623,500 | 585,649 | 1,273,342 | 997,668 | 649,842 | 412,019 |
| 일반대손지상각  |        |         | 15,000  |           |         |         |         |
| 지출<br>내역 | 지도사업순비 | 74,700  | 25,771  | 2,000     | 1,890   |         |         |
|          | 인 건 비  | 210,523 | 173,364 |           |         |         |         |
|          | 퇴작공과금  | 21,345  | 21,35   |           |         |         |         |
|          | 제세공과금  | 23,400  | 8,995   |           |         |         |         |
|          | 경 비    | 226,605 | 127,915 |           |         |         |         |
|          | 계      | 556,573 | 357,390 | 2,000     | 1,890   |         |         |
| 사업 외 손익  |        | 70,759  | 82,947  | 124,261   | 24,764  |         |         |
| 법인세 등    |        | 470     | 2,193   |           |         |         |         |
| 당기순이익    |        | 70,000  | ▲18,857 |           |         |         |         |

- 농산물 공동출하사업 : 양파, 마늘, 오이, 쪽파, 무, 배추, 수박, 기타 양념채소류 등의 공동출하를 통하여 1995년 7억2천만원, 1996년 27

억9천만원의 판매고를 달성함.

<영농조합 공동출하와 농가 포전매매의 비교>

- 공동출하 : 매출액 134,341천원(1,678톤)에서 작업비용 83,900천원을 제외한 평균단가는 750원/kg
- 포전매매 : 평균포전거래(110만원/200평)와 평균수량 160망/20kg로 산정했을 때, 작업비용(2만원/200평)을 제하면 평균단가는 338원/kg
- 농자재 공동구매사업 : 필름, 양파종자, 농업용모타, 관수자재, 퇴비, 하우스자재, 양파·마늘망, 쪽파끈, 기타자재 등의 공동구매를 통하여 1996년도에 총 7억8천만원을 판매하고 4천만원의 매출이익을 실현함.

## 5. 법인경영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 농업법인의 성공을 위한 주된 요인으로는 조직 구성원의 의식개혁 및 자금조달 능력 등이 지적됨. 특히 법인의 대표자가 경영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사업능력이 중요한 요인임.
  - 영농조합법인의 성공요인으로는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조직내의 의식개혁이나 인재 확보 등이 지적됨.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조직내의 의식개혁을 가장 큰 성공요인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표자의 사업능력 및 자금조달 능력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반면에 경영의 실패요인으로는 구성원의 불화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됨.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불화가 법인경영의 가장 큰 실패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그 다음이 자금의 비효율적 이용이나 판로 확보 문제 등이 지적됨.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수탁작업이라는 사업영역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성원의 불화를 야기함으로써 운영 부실로 연결되며, 다음으로 인재 확보, 자금 이용 등의 문제가 지적됨.

표 4-17 사업성공을 위한 우선순위

단위: 개소, %

|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     |     |     |     | 농업회사<br>법인 |     | 합 계 |     |     |           |
|------------------------|--------|-----|-----|-----|-----|-----|------------|-----|-----|-----|-----|-----------|
|                        | 생산     |     | 가공  |     | 유통  |     |            |     |     |     |     |           |
|                        | 1순위    | 2순위 | 1순위 | 2순위 | 1순위 | 2순위 | 1순위        | 2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합계        |
| 조합장의<br>능력             | 1      | 1   |     |     |     |     | 3          | 2   | 4   | 3   | 3   | 10(14.3)  |
| 조직내의<br>의식개혁           | 3      | 2   |     | 2   | 1   |     | 5          | 4   | 9   | 8   | 2   | 19(27.1)  |
| 인재확보의<br>용이            | 2      | 2   |     |     |     |     |            |     | 2   | 2   | 1   | 5(7.1)    |
| 사회적(지역<br>적)신용도의<br>증대 |        | 2   |     |     |     | 3   |            | 2   |     | 7   | 3   | 10(14.3)  |
| 자금조달의<br>용이            | 4      | 2   | 1   | 2   | 3   | 1   | 1          | 1   | 9   | 6   | 6   | 21(30.0)  |
| 기타                     |        | 1   | 4   |     |     |     |            |     | 4   | 1   |     | 5(7.1)    |
| 계                      | 10     | 10  | 5   | 4   | 5   | 4   | 9          | 9   | 28  | 27  | 15  | 70(100.0) |

표 4-18 실패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단위: 개소, %

| 구분             | 영농조합법인 |     |     |     |     |     | 농업회사<br>법인 |     | 합 계 |     |     |           |
|----------------|--------|-----|-----|-----|-----|-----|------------|-----|-----|-----|-----|-----------|
|                | 생산     |     | 가공  |     | 유통  |     |            |     |     |     |     |           |
|                | 1순위    | 2순위 | 1순위 | 2순위 | 1순위 | 2순위 | 1순위        | 2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합계        |
| 조합원 불화         | 4      | 1   | 1   |     | 1   |     | 8          |     | 14  | 1   | 1   | 16(30.8)  |
| 자금의<br>비효율적 이용 | 2      | 1   |     |     | 1   | 1   |            | 3   | 3   | 5   | 6   | 14(26.9)  |
| 인재확보 실패        |        | 1   |     | 1   | 1   |     |            | 3   | 1   | 5   | 2   | 8(15.4)   |
| 판로확보 실패        | 1      | 2   | 2   | 1   |     | 3   |            |     | 3   | 6   | 1   | 10(19.2)  |
| 기타             | 1      |     | 1   |     | 1   |     | 1          |     | 4   |     |     | 4(7.7)    |
| 계              | 8      | 5   | 4   | 2   | 4   | 4   | 9          | 6   | 25  | 17  | 10  | 52(100.0) |

표 4-19 사업성공의 요인

단위: 개소, %

| 구분      | 영농조합법인 |     |     |     |     |     | 농업회사법인 |     | 합 계 |     |     |           |
|---------|--------|-----|-----|-----|-----|-----|--------|-----|-----|-----|-----|-----------|
|         | 생산     |     | 가공  |     | 유통  |     |        |     |     |     |     |           |
|         | 1순위    | 2순위 | 1순위 | 2순위 | 1순위 | 2순위 | 1순위    | 2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합계        |
| 조합원의 확보 |        | 2   |     | 1   |     |     |        |     |     | 3   | 1   | 4(11.1)   |
| 자금의 확보  | 4      | 2   | 1   | 2   |     | 1   |        | 1   | 5   | 6   | 1   | 12(33.3)  |
| 인재의 확보  | 1      | 3   | 1   |     |     |     | 1      |     | 3   | 3   | 2   | 8(22.2)   |
| 판로의 확보  |        | 1   | 3   | 1   | 2   |     |        |     | 5   | 2   | 5   | 12(33.3)  |
| 기타      |        |     |     |     |     |     |        |     |     |     |     |           |
| 계       | 5      | 8   | 5   | 4   | 2   | 1   | 1      | 1   | 13  | 14  | 9   | 36(100.0) |

- 전체적으로 농업법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금의 확보 및 판로 확보 등이 중요한 것으로 제기됨.
- 농업법인의 대부분이 자본회전율이 낮기 때문에 운영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는 정책지원에 있어 시설자금 보다는 운영자금을 확충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
- 판로의 안정적 확보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임. 따라서 준조합원제도나 비농업인 가입을 통하여 자금의 동원능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생산한 농산품의 판로도 확대하는 경영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 5 장

# 외국의 농업법인 제도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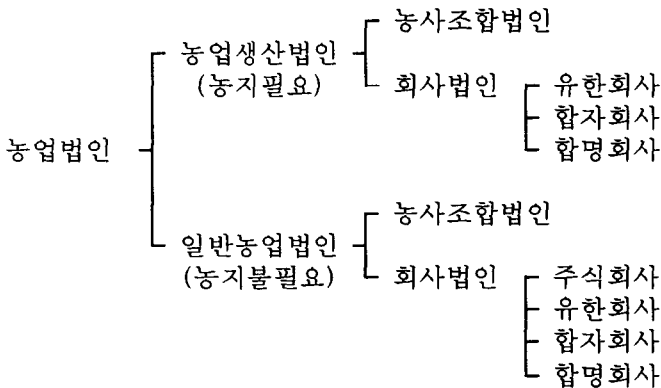
## 1. 일본의 농업법인 제도

### 1.1. 제도의 개요

- 농업법인 제도는 1960년대초에 전업농가의 세무대책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여 1962년 농협법에서 농사조합법인이 도입되고, 이어 농지법 개정에서 회사형태의 법인을 도입함.
- 1957년 풍작으로 도쿠시마현(徳島縣)의 밀감농가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두배로 증가하게 되자 나카다(中田長吉)씨가 일반상점과 같은 세제상의 이점(가족노임의 손실처리, 결혼 이월 등)을 얻기 위하여 세무사와 상담하여 ‘新紅園’이라는 유한회사를 설립함.
- 이를 계기로 농업법인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1958년에 전국농업회의소가 사무국이 되어 법제화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농림성은 법인의 농지소유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5년 여의 국회 논의를 거쳐 법제화에 이름.

- 1961년 제정된 농업기본법에서 협업경영 육성을 명시하였으며, 1962년 농지법 개정을 통하여 농가 이외의 농업경영체에 대한 농지소유를 인정하기 위하여 「농지법상의 농업생산법인」의 성격을 규정함(농지법 제2조 제7항).
- 농업생산법인에는 농사조합법인과 회사 형태의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이 해당됨.

그림 5-1 일본의 농업법인 형태



- 농업생산법인의 성격
  - 기업 형태 : 농사조합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에 한정
  - 사업 : 농업경영, 농업에 부수적인 임업, 기타 농업의 부대사업
  - 구성원 : 개인인 농지출자자(소유권, 사용수익권) 및 노동제공자(연간 150일 이상 종사)
  - 경영 책임자 : 경영책임자의 과반수는 상시종사자(농민)일 것
- 농사조합법인(농협법 제72조의 3)
  - 성격 : 조합 형태로서 조합원의 3인 이상의 협업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
  - 사업 : 농업경영, 공동이용시설 설치, 농작업 공동, 기타 부대사업

## 1.2.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지원

### ○ 세제상의 혜택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유한회사는 보통 법인의 경우 37.5% 이지만,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유한회사로서 연간 소득이 800만엔 이하일 경우에는 28%를 적용함.
- 소득세는 유한회사의 임원 및 종업원과 농사조합의 급여 수령자는 보수 및 급여에 대하여 과세되며, 농사조합법인의 배당액 수령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함.
- 사업세에 대해서 유한회사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며, 농사조합법인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2조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전부 만족하는 농사조합법인의 농업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 ○ 농지 등의 재산상속

- 법인에는 상속이 없으며,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농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세 납세유예 제도는 제외됨.

### ○ 정책금융지원

- 농지 등 취득자금의 대출 한도액은 개인경영에 비하여 높으며, 또한 경영체육성 특별융자 제도에 의한 대부 한도액도 개인경영은 1억5천만엔인데 대하여 법인경영의 경우에는 5억엔임.

### ○ 사회보험제도의 이용

- 유한회사와 농사조합법인은 사업주나 피고용자를 막론하고 각각 후생연금과 농림어업 단체직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 건강보험은 사업에 관계없이 가입 의무를 지니며,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가입이 가능함. 노동재해보험은 개인경영에 대해서는 노동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보험과 노동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경영의 경우도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표 5-1 일본의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지원

| 단 계 별                 | 지 원 내 용                                                                                                                                                                   | 비 고                                                               |
|-----------------------|---------------------------------------------------------------------------------------------------------------------------------------------------------------------------|-------------------------------------------------------------------|
| 법인의 설립과<br>경영 합리화     | (농업법인 육성지원 사업)<br>○ 농업생산법인의 시설과 경영내용에 대한<br>상담실시<br>○ 경영연수회 개최 등                                                                                                          |                                                                   |
| 자기자본의 충실              | (농업생산법인 출자육성사업)<br>○ 현공사의 농지현물 출자<br>- 출자지분은 단계적으로 구성원에 양도                                                                                                                |                                                                   |
| 세제상의 특례활용             | (농기계 등의 할증상각제도)<br>○ 농업기반강화 촉진법에 따라 시정촌의<br>인정을 받은 경영개선계획에 입각하여<br>규모를 확대한 경우 농기계 할증상각                                                                                    | · 인정농업자<br>· 청색신고 실시자<br>· 일정규모 이상 확대자<br>· 할증률 20%<br>(신규취농 30%) |
| 정책자금의 활용              | (저리 운전자금 및 장기자금 신설)<br>○ 법인경영을 포함한 경영체의 육성을 위<br>하여 저리의 운전자금 및 경영개선을 위<br>한 장기자금 신설<br><br>(정책자금의 법인 한도액 적용)<br>○ 농림어업 금융공고의 농지취득자금 등에<br>대하여는 1호 1법인도 법인의 융자 한도<br>액을 적용 | · 인정농업자<br>· 농업경영개선촉진자금<br>(연2.25%)<br>· 농업경영기반강화자금<br>(연2.0%)    |
| 후계자가 부족한<br>지역의 농지 활용 | (농용지 이용집적 준비금 제도)<br>○ 지역의 합의로 특정농업법인(농업생산법<br>인)을 설립할 경우 농지매입을 위한 준<br>비금의 적립과 당해 적립금은 손금산입,<br>당해 준비금을 사용한 배경의 압축기장                                                     | · 특정농업법인<br>· 농업수입의 10%이하<br>(적립 5년간)<br>· 적립액의 손금산입              |

### 1.3. 농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실태

- 1995년 농업센서스에 의하면, 일본의 농가(판매농가) 수는 265만호, 농가 이외의 사업체 (경영목적이 판매) 수는 6,436개소로 파악됨. 또한 농업경영 목적의 농업법인은 농가(1호 1법인)이 4,541호, 농가 이외의 사업체가 4,984개로서 합계 9,525개로 파악됨.
- 농업법인의 지위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수에서 0.4%, 경지면적에서 2.7%를 차지하고, 품목별 생산점유율은 쌀 0.6%, 화훼

8.7%, 종묘·묘목 17.3%, 육우 18.0%, 비육돈 50.3%, 산란계 72.4%, 육계 49.5% 등임.

- 농업생산법인 수는 1971년의 3,069 개소에서 1995년 4,150 개소로 증가하는 추세
  - 조직형태별 : 농사조합법인 32%, 유한회사 67%, 합자회사 0.3%, 합명회사 0.1% 등
  - 업종별 : 축산 36%, 미맥작 19%, 과수 13%, 채소 7%, 기타 25% 등
  - 구성 세대수별 : 1호 36%, 2호 16%, 3~5호 30%, 6~10호 11%, 11호 이상 7% 등
  - 경지규모별 : 도부현 농업생산법인 2,591개 중에서 10ha 이상이 561개소(21.7%).

표 5-2 일본의 농업생산법인 변화 추이

<조직형태별> 단위: 개소, %

|       | 농사조합법인 | 유한회사   | 합자회사  | 합명회사  | 계       |
|-------|--------|--------|-------|-------|---------|
| 1985  | 1,324  | 1,825  | 14    | 5     | 3,168   |
| 1990  | 1,626  | 2,167  | 16    | 7     | 3,816   |
| 1995  | 1,335  | 2,797  | 14    | 4     | 4,150   |
| (구성비) | (32.2) | (67.4) | (0.3) | (0.1) | (100.0) |

<업종별>

|       | 미 맥    | 과 수    | 축 산    | 채 소   | 기 타    | 계       |
|-------|--------|--------|--------|-------|--------|---------|
| 1985  | 558    | 516    | 1,262  | 157   | 680    | 3,168   |
| 1990  | 558    | 592    | 1,564  | 216   | 886    | 3,816   |
| 1995  | 803    | 523    | 1,510  | 293   | 1,021  | 4,150   |
| (구성비) | (19.4) | (12.6) | (36.4) | (7.1) | (24.5) | (100.0) |

<구성 세대수별>

|       | 1호     | 2호     | 3~5호   | 6~10호  | 11~20호 | 21호 이상 | 계       |
|-------|--------|--------|--------|--------|--------|--------|---------|
| 1995  | 1,497  | 660    | 1,252  | 448    | 173    | 120    | 4,150   |
| (구성비) | (36.1) | (15.9) | (30.2) | (10.8) | (4.1)  | (2.9)  | (100.0) |

자료 : 농림수산성, 『농지조정연보』, 1996.

- 농업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
  - ① 농업법인이 주로 겸업종사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농업노동일수가 적기 때문에 전업적인 기계운전자가 육성되지 못하고 경영관리 노동에 대한 구성원의 평가가 소홀함.
    - 따라서 경영관리를 담당하는 대표자에게 적절한 보수가 지급되지 못하고 리더의 확보가 곤란하여 법인의 활력이 저하되는 경향
  - ② 농업법인인 전업농가로 구성된 경우에는 법인 구성원과 고용자의 연간 취업을 위하여 일부 법인은 미곡집하, 가공, 판매 부문으로 경영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사업의 한계가 노출됨.
    - 규모 확대에 의한 고용노동력의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법인의 구성원 요건의 제약으로 분사화를 피하는 사례도 발생.
    - 지역 상공회 구성원의 출자, 소비자의 출자 등을 통하여 판로를 확대하거나 음식점 혹은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사례도 나타남.

#### 1.4. 농업법인에 관한 최근의 논의 동향

##### (1) 농업수산성의 의견

- 상법 개정을 통하여 주식회사의 '1인1법인'이 가능하다는 점과 관련하여, 농업의 기업화 및 농업자의 기업가 정신을 배양한다는 관점에서 주식회사 형태가 적용될 수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 주식회사 문제는 결국 농지의 취득 권리와 관련하여 자본 결합체에 의한 농지의 지배 문제가 가장 큰 논쟁점이며, 단순히 경영형태론만의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음.

##### (2) 연구자 및 학자의 견해

- 농업구조 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으로서 소농체제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법인 문제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음.

- 첫째는, 농업의 협동화(=공동화)에 의하여 소농제를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노선은 유한회사를 비롯한 어떠한 회사 형태의 농업법인을 부정한다는데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협동화와 관련하여 농민 개인의 인격적인 자립 문제를 논의의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임.
- 장래에는 사적소유제 하에 있어서 협동조합적 토지보유를 피하고(협동농장), 생산과 경영주체의 정립 방향에 대해서는 당분간 파트너쉽과 같은 농민경영(종래형의 가족경영이 아닌 것에 주의)을 기초로 하여 협동작업 단계 또는 경영주체에까지는 도달하지 않는 조직체로서의 준협동경영 단계의 주체도 고려하고 있음. 그리고 협업경영 단계까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를 지향하고 있는 점이 특색임.
- 반면에, 위와는 정반대로, 소위 규제완화 노선으로서 생산 및 경영에 관하여 모든 법적인 틀을 벗어난 자유화 노선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며, 또한 개별농가의 경영외부 의존이 진전될수록 법인화가 중시될 수 밖에 없다는 견해도 제기됨. 여기에는 농가의 양극분해형 구조재편론을 억누르는 것은 곤란하다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음.
- 이 같은 논의는 가족 소유(보유)·개체의 확립과 경영의 자립·가족협동노작적 소농경영을 개혁하려는 점에 있어서는 거의 같은 노선에 있으며, 현행의 농지법적 농지제도의 개편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견해가 일치하고 있음.

### (3)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의 의견

- 농지법상의 농업생산법인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농업법인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공익법인(사단 또는 재단법인)이며, 이는 농지의 권리 취득은 할 수 없지만 작업수탁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임.
- 농업생산법인 정책이 농지제도와 정합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농촌 현장에서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의 분리가 예상 이상의 빠른 속도로 진척되면서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대안으로 공익법

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임.

- 농가의 분해가 전계층에서 하강하는 가운데, 공익법인이 가족경영에 대신하는 새로운 경영체로 출현하고 있다는 점임. 이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의 오퍼레이터로 농민(신규 참여를 포함)을 조직화함으로써 새로운 농업경영 주체를 창출하고자 하는 점도 주목됨.
- 공익법인 성립의 의의가 지역의 농지보전이라는 소극적인 측면도 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도 강조됨.

#### (4)농민의 의견

- 개별경영의 경영 개선을 위한 방향의 일환으로서 회사 형태(특히 유한회사)의 법인이 농민들 가운데 중시되고 있음. 개별 자작농의 단순한 집합체로서의 회사(경지규모 확대의 수단으로서의 법인화)만이 아닌 자본규모의 확대와 경영·기획·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회사법인의 설립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다시 말하면, 농민 스스로가 농업생산법인을 기업체적 성격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음.
- 농업생산법인이 아닌 일반법인, 즉 농지의 권리 취득과는 관계 없는 농업법인화가 모색되고 있음. 그 중 하나는 농산물 가공·유통·판매를 사업으로 하는 경영체를 농민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 활성화되고 있음.
- 특히, 주식회사에서는 도시의 시민을 주주로 수용하여(농산법인에는 주주가 허용되지 않으며, 출자좌수 제한도 도입), 이들과 농민이 하나의 집단으로 조직하는 새로운 경영체를 창출하고 있음. 이러한 회사에서는 농민과 시민이 연대하여 도시·농촌간의 교류 및 관광농원 운영 등과 같이 농업을 상품화하고 있는 것이 주목됨.

## 2. 프랑스의 농업법인 제도

### 2.1. 제도의 개요

- 프랑스는 유럽에서 제일 먼저 법인경영을 도입한 나라이며, 1960년대 까지 농업경영조합(SCEA; Societe Civile d'Exploitation Agricole)이 소농을 중심으로 결성되는 정도였음.
- 1962년의 농업기본법보완법에서 각종 농업경영 조직을 육성하도록 규정한 이후, 1972년 공동농업경영단(GAEC; Groupement Agricole d'Exploitation en Commun)이 창설되고, 이어 1985년에는 영농유한회사(EARL; Exploitation Agricole a Responsabilite Limitee) 제도가 창설됨.
- 농업경영조합(SCEA)
  - 성격 : 민법의 규정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조합이며 법인격을 가짐.
  - 목적 : 농가들이 농지 등의 영농자산을 공동경영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함.
  - 사업 : 경종, 포도주, 과실 등의 영년작물, 채소·원예, 축산 등의 공동경영
- 공동농업경영단(GAEC)
  - 성격 : 공동경영을 위한 경영자 집단으로 농지출자, 현금출자, 노동출자로 설립
  - 목적 : 농가들이 농기계, 농지 등의 영농자산을 공동투자함으로써 규모경제를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함.
  - 사업 : 농업경영(임차지 경영도 가능)
  - 구성원 : 농지 혹은 시설 등의 영농자산 출자자 및 노동 출자자(영농기술자)로 구성되며,
    - 1호 1법인으로도 설립 가능
  - 조직 형태 : 대부분 가족경영(혈연집단)이 확대된 법인형태

○ 영농유한회사(EARL)

- 성격 : GAEC에 비농업인의 자본 참여를 허용한 회사형태로서, 다만 비농업인의 출자 지분이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함. 또한 설립시에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반드시 1인 이상 참여해야 함.
- 목적 : 농업경영자산의 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원의 공동경영을 목적으로 함.
- 사업 : 농업경영(임차지 경영도 가능)

## 2.2. 최근의 동향과 전망

- 법인 설립을 장려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에 필요한 회계비용의 1/4을 정부가 지원하며, 특히 농업인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법인의 자산을 소유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조가 불가능하도록 함.
- 농업경영의 주축은 가족경영이지만, 농업법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1995년 현재 개별영농을 하고 있는 농장수는 64만호이고 농업법인은 97,000개소임.
  - 1995년 현재 GAEC 44,000개소, EARL 30,000개소, SCEA 14,000개소, 그밖에 임의 형태인 농업주식회사 2,500개소, 개인지분 참여 6,000호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농업법인이 경작하는 경지규모는 프랑스 전체의 3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평균 경지규모는 개별농가가 30ha 수준인데 대하여 GAEC가 106ha, EARL이 84ha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최근 들어 영농후계자들의 농업법인에 대한 호응이 높아져 35세 미만의 젊은 취농자 중 절반 이상이 농업법인을 통해 신규취농하는 경향임.
- 농업법인에는 이밖에도 농업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농업용토지자산의 보유·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토지집단(GFA)과 부동산민사조합

(SCI) 등이 있음.

- GFA(Groupement Foncier Agricole)는 농지소유자의 집단으로서 출자한 농지를 유지관리해주는 법인이며, 대부분 농지임대차법에 의하여 농업경영자에게 장기임대하고 있음. 조직 형태로 가족형, 조합형, 투자형 등이 있으나, 농지의 분할 상속을 가적간에 해결하는 목적으로 현재 1만개소 정도가 설립된 것으로 파악됨.

표 5-3 프랑스 농업법인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 1979    | 1988     | 1992     | 1995   |
|-------------|---------|----------|----------|--------|
| GAEC        | 15,300  | 37,700   | 46,400   | 44,000 |
| (그중친자 GAEC) | (9,800) | (19,300) | (18,600) | -      |
| EARL        | -       | 1,500    | 13,100   | 30,000 |
| SCEA        | 5,600   | 9,900    | 12,000   | 14,000 |
| 임의조합        | 18,200  | 19,200   | 6,800    | 8,500  |
| 계           | 39,100  | 63,300   | 78,300   | 97,000 |

자료 : Philippe Quevremont, “프랑스의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의 현황과 발전 방향』 (심포지움자료), 농협중앙회, 1996.7.

- 1993년 이후 공동농업정책(CAP : 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의해 정부의 농업 보조정책이 축소됨으로써 농가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임(1988년 126만호 → 1995년 73만호). 반면에 농업법인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신규취농자는 기존 법인에 파트너로서 영농을 시작하는 것이 용이하며, 특히 여가를 지향하는 젊은 세대들이 법인경영에서 여가활동을 추구하는 경향임.
- 정부에서도 앞으로 영농법인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15~20년후에는 농업법인이 개별경영체의 수를 능가할 것이며, 경영규모가 크고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 농업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3. 외국 사례에 의한 시사점

- 일본과 프랑스의 농업법인 제도와 운영실태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음.

①농가 주도의 법인화: 농업법인 제도와 정책의 근간은 농가(가족농)의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비농업인 참여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주식회사의 농지소유는 허용하지 않음.

- 주식회사형의 농업법인 제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로 인식.

②생산법인의 육성: 농업법인은 농지 출자를 기본으로 성립되며, 정부 정책지원도 농지를 경작하는 법인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프랑스에서는 농업법인 제도를 농지의 분할상속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였으며, 일본은 농지를 소유하는 법인을 생산법인으로 규정하고 전업농 수준 이상의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③다양한 법인화 형태: 농업법인의 조직 형태로서 조합형과 회사형을 다양하게 제도화하여 농업인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화를 꾀하는 농업인들은 무한책임제의 조합형 보다는 유한책임제인 유한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임.

- 프랑스에서는 1980년대에 약10%의 농업법인이 도산하였는데, 당시 유한회사에 속해 있던 개별농가들은 유한책임으로 인하여 농가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었음.

④가족법인 장려: 농업법인 제도가 개별농가간의 협업을 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경영만에 의한 법인화(1호 1법인)를 장려하는 추세임. 가족경영의 법인화의 효과로 가계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경영의 식 함양, 농지의 분할상속 방지, 후계자의 경영권 확보 및 유연한 경영승계 등을 실현하고 있음.

⑤경영개선 지도·상담: 정부의 농업법인 육성정책으로는 지원되는 용

자금(보조금) 이외에 건실한 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영교육 및 지도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농업법인은 초기에는 협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되었으나, 점차 협업의 수단으로서 보다는 농업경영을 근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어가고 있음. 또한 부족한 농업후계자의 신규취농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나, 농업인의 자산을 경영자본과 분리하는 수단으로서 법인화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음.
- 농업법인은 협업적 공동경영이라는 경영상의 한계가 지적되지만, 규모화·전문화된 농업경영 주체라는 유리성을 바탕으로 향후의 농업생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제 6 장

# 농업법인 정책의 개선방안

### 1. 농업법인 제도와 정책과제

#### 1.1. 농업법인의 현대적 의미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우리 농정사상 처음 시도되는 법인경영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향방이 농업법인제도의 존속은 물론 농업구조정책의 방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임.
- 농업법인은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 당시에는 소농의 협업체로서 농업생산의 규모확대를 추구한 것이 사실임. 그러나 우리 농촌에 내재한 뿌리깊은 농지소유 의식과 개별영농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소위 사회주의식의 완전협업경영 방식은 정착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음.
- 따라서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협업농 범주에서 현재의 농업법인을 평가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음. 물론 그동안의 제도적 또는 정책적인 대응과정에서 당초의 취지인 협업적 농업경영(=농산물생

산)적인 성격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성격이 변질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 것임.

- 현재의 영농조합법인은 최근의 농업구조 조정의 산물로 봐야 하며, 실제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활동은 품목별 특성이나 조직이 만들어진 과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른바 농산물의 공동생산에 중점을 둔 ‘생산형 법인’이 영농조합법인의 본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농산물의 생산은 개별적으로 하면서 이를 보완하거나 부수적인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영농조합법인을 도외시킬 수는 없는 상황임.
- 다양한 형태의 하부조직들을 포괄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일률적인 발전방향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오히려 당면하고 있는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에서 기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특히 앞으로는 정책지원이 법인 설립을 조장하거나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함.
-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의 조직화 내지 협업화를 통한 유리성과 그 경영단위의 법인화를 통한 유리성을 향유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살릴 수 있는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함.
- ①협업화의 의의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음.
  - 첫째, 농업경영의 전문화 혹은 복합화(다각화)를 통한 경제적 유리성을 추구할 수 있음. 즉, 개별농가의 소규모 생산을 통합한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규모의 경제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또한 생산물의 고품질화·균질화·규격화를 통한 판매의 이익을 향유하고, 나아가서 소규모 농가에서는 불가능한 자본·기술집약적인 농업의 실현도 기대할 수 있음.
  - 둘째, 협업경영이 장차 농기업(agri-business)으로 발전 가능한 새로

운 농업경영의 형태라는 점임. 협업경영은 개별농가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사업 능력을 보완할 수 있으며, 개별농가의 생산을 바탕으로 가공·판매 등을 연계한 농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음. 또한 이와 같은 부대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여 농외소득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음.

- 세째, 협업경영이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지속성 있는 농업경영체로 정착될 수 있다는 점임. 가족농은 가족내의 후계자 단절로 당대의 농업경영이 소멸되지만, 협업농은 조합원이나 사원 등의 신규 참여가 가능하므로 농업경영의 영속성이 확보됨. 오늘날과 같이 경영주 1인 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들이 협업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평생 직장과 노후를 보장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됨.

표 6-1 개인경영과 법인경영의 특성 비교

| 구 분    | 개 인 경 영<br>(농가) | 협 업 경 영              |                        |
|--------|-----------------|----------------------|------------------------|
|        |                 | 임의 협업                | 법인경영                   |
| 경영체 성격 | 단독 자연인          | 복수 자연인               | 복수출자자의 법인              |
| 사업 계속성 | 사망으로 종결         | 합의된 기간 또는<br>구성원의 해체 | 영구 또는 일정기간             |
| 책임 형태  | 무한책임            | 무한책임                 | 무한 또는 유한책임             |
| 자금 조달  | 개인의 투자          | 구성원의 투자              | 구성원 출자, 차입금            |
| 토지 조달  | 상속, 구입, 차입      | 구성원의 제공              | 출자, 구입, 차입             |
| 의사 결정  | 경영주 단독          | 구성원의 합의              | 구성원의 합의                |
| 소유자 사망 | 상속 또는 파산        | 생존하는 구성원에<br>매각      | 지분은 유산 또는<br>상속으로 남게 됨 |

②농업경영의 법인화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요약됨.

- 첫째, 제도적·정책적인 측면으로서 법인격의 획득에 따른 채권·채무

및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활동과 경영내부의 업무에 이점을 향유함. 또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세제, 사회보험 제도, 융자제도 등의 제도상의 유리성이 주어짐.

- 둘째, 법인화를 통하여 자본이 결합되어 자본 조달 능력이 증대되며, 또한 경영관리 능력이 결합되어 총체적으로 경영자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음. 특히 법인화에 의하여 구성원 후계자의 참여 조건이 정비됨으로써 유연한 경영 승계와 다양한 인재의 확보가 가능함.
- 세째, 농업경영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나 의식 개혁의 동기를 제공함. 즉, 가족농의 연장선에서 법인화를 통한 경영자 의식을 제고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직장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농가와는 달리 농업에 대한 직업 의식을 고취할 수 있음. 또한 대외적인 신용력이 제고되어 금융면이나 시장 교섭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
- 네째, 법인 경영이 회사의 형태로 성립되는 경우에는 인적 집단의 성격과 자본 집단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의 효율성 원칙을 용이하게 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구성원이 농가에 한정되지 않고 비농가도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또한 경영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경영자 능력이나 노동력 및 기타 생산 요소의 추가적인 조달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경영 내부에 한정하지 않고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음.

## 1.2. 농업법인 정책의 재정립

### ○ 농업법인 육성정책의 방향 설정

- 영농조합법인을 과거와 같은 협업농 범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경영형태와 사업유형별로 차등화된 정책지원이 필요함.
-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농산물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책지원사업의 내용도 구

분할 필요가 있으며,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가공·유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은 전문협동조합으로 설립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실적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법인에 대한 등록 말소를 장려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검토해야 함. 예를 들어 설립후 3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해산을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별경영체지원사업의 보조율 및 융자조건 조정 방안
  - 보조지원을 줄이고 장기저리융자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종합자금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별로 서로 다른 보조율 및 융자조건을 단순화하고, 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기준으로 전체 개별경영체지원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동일한 보조율과 융자조건을 적용해 나아감.

표 6-2 농림사업 지원방식의 개편방안

| 유 형 별                 | 해 당 사 업                                         | 지원조건 조정목표(2001)                                                     |
|-----------------------|-------------------------------------------------|---------------------------------------------------------------------|
| A형<br>(일반지원사업)        | ○ 농업인의 안정생산지원사업                                 | - 보조: 0, 융자: 70, 자담: 30<br>- 금리: 5%, 5년 이내 균분상환<br>※ 실질보조효과: 10.7%  |
| B형<br>(경쟁력강화<br>지원사업) | ○ 전문경영체의 경쟁력강화를<br>위한 산업정책적 지원사업<br>○ 종합자금 대상사업 | - 보조: 0, 융자: 80, 자담: 20<br>- 금리: 3%, 3년거치 7년내 상환<br>※ 실질보조효과: 30.9% |
| C형<br>(기반지원사업)        | ○ 기반조성, 환경분야 등 공적<br>지원의 필요성이 큰 사업              | -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br>- 금리: 3%, 3년거치 7년상환<br>※ 실질보조효과: 43.2%  |
| D형<br>(공공지원사업)        | ○ 생산기반정비적 성격이 강한<br>지원사업                        | - 보조: 50%이상                                                         |

주: 농림부 농정발전기획단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작성.

-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지원사업의 조정
  - 지원대상자 선정 : 신설 법인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고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생산법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영농조합법인의 본래 취지가 농업경영의 규모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벤치마킹을 통한 단계적 지원체계 확립 : 경영발전 단계에 따라 필요한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경영실적이 우수한 법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성격의 추가지원으로 활력을 제고시켜야 함. 대부분의 법인이 초기에는 농업경영을 중심으로 출발하여 점차 가공·판매·유통사업 등으로 사업 확장을 꾀하게 되므로 법인경영의 발전과정에 따라서 필요한 정책지원 체계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운영자금 지원 확충 : 농업법인은 사업 대상이 농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본회수 기간이 길며, 따라서 운영자금 지원이 확충되어야 함.
-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 훈련
  - 농업법인의 난립과 부실운영은 자칫 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관리를 위해서도 적절한 교육훈련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특히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농업법인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법인에 대한 교육의무화 조치 등이 필요함.
  - 농업법인에 대한 경영지도 및 상담을 위한 상시 지원체제가 확립되어야 함.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컨설팅회사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
- 농업경영컨설팅 시스템 구축
  - 정부정책자금을 수혜받는 전문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을 의무화하고, 실질적인 컨설팅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경영체에 대해서는 부가기장을 의무화함.
  - 농촌지도소, 생산자단체 전문팀, 특성화대학, 민간 컨설팅 회사 등에 농업경영컨설팅의 수행을 위한 자격을 부여하고, 컨설팅 비용은 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초기에는 일부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

- 특수한 경우 (사업성격, 자금규모)외에는 컨설팅기관의 심사 및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로 대출하고,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기타사항
  - 법인세 감면 : 현재 농업법인은 설립후 4년간 법인세 면제(5년차 50% 감면, 6년차부터 부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특히 농업경영 목적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농업회계 양식의 개발 :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신고에 복식부기 방식의 기업회계가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농업경영에 적절한 회계장부의 개발이 필요함.
  - 농업법인의 사회보험 가입 : 농업법인은 사원을 고용한 사업장이므로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서 농업인과 다르게 취급될 우려가 있음. 예를들어 직장의료보험이 된다면 농업인과 같은 수준의 정부보조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2. 농업법인 정책개선 의 당면과제

### 1.1. 법인 설립의 과열 문제

- 1994년부터 영농조합법인 설립이 그간의 추세보다 급격히 증가하고 정부의 육성목표를 초과함으로써 과열 설립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영농조합법인 설립이 증가하는 이유
  - 개별경영에 비해 정책사업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받기가 용이하며, 지원금액도 많음.
  - 개별전업농의 경우 5,000만원까지 지원되나 조합법인의 경우 억대

- 이상의 사업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됨.
- 중소농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쉬운 수단이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는 것임.
  - 농업인이 농자재의 공동구매나 농산물의 공동출하를 위하여 기존의 농협조직 등을 활용하기보다 법인체를 결성하여 직접 사업에 참여하기를 선호함.
  -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단위농협이 경제사업에 소홀한 지역일수록 영농조합법인의 결성이 활발함.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설립절차가 간편함.
  - 회사법인의 경우 상법상 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조합법인의 경우 출자규모와 관계없이 농업인 5인 이상이면 설립 가능

표 6-3 법인이 과열설립되는데 대한 견해

단위: 개소, %

| 구 분  | 현재 적당         | 축소해야          | 더 설치해야        | 기타            | 합계            |
|------|---------------|---------------|---------------|---------------|---------------|
| 영농조합 | 8<br>(11.94)  | 40<br>(59.70) | 9<br>(13.43)  | 10<br>(14.93) | 67<br>(100.0) |
| 농업회사 | 5<br>(25.00)  | 12<br>(60.00) | 2<br>(10.00)  | 1<br>(5.00)   | 20<br>(100.0) |
| 합 계  | 13<br>(14.94) | 52<br>(59.77) | 11<br>(12.64) | 11<br>(12.64) | 87<br>(100.0) |

자료 : KREI 조사결과(1997.6). 이하의 표에서 같음.

표 6-4 과열설립이 정부 보조금 때문이라는 의견

단위: 개소, %

| 구 분  | 긍정            | 부정            | 모르겠다        | 합계            |
|------|---------------|---------------|-------------|---------------|
| 영농조합 | 36<br>(53.73) | 29<br>(43.28) | 2<br>(2.99) | 67<br>(100.0) |
| 농업회사 | 6<br>(30.00)  | 14<br>(70.00) | 0<br>(0.00) | 20<br>(100.0) |
| 합 계  | 42<br>(48.28) | 43<br>(49.43) | 2<br>(2.30) | 87<br>(100.0) |

표 6-5 법인 설립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단위: 개소, %

| 구 분  | 현재는 별로<br>문제가 없다 | 설립은 자유로<br>심사는 엄격히 | 자격조건을<br>제한하여 설립 | 기타           | 합계            |
|------|------------------|--------------------|------------------|--------------|---------------|
| 영농조합 | 1<br>(1.49)      | 28<br>(41.79)      | 33<br>(49.25)    | 5<br>(7.46)  | 67<br>(100.0) |
| 농업회사 | 2<br>(10.00)     | 4<br>(20.00)       | 12<br>(60.00)    | 2<br>(10.00) | 20<br>(100.0) |
| 합 계  | 3<br>(3.45)      | 32<br>(36.78)      | 45<br>(51.72)    | 7<br>(8.05)  | 87<br>(100.0) |

표 6-6 현재의 정책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한 견해

단위: 개소, %

| 구 분  | 합리적이다         | 너무까다롭다        | 선정이 불합리       | 기타           | 합계            |
|------|---------------|---------------|---------------|--------------|---------------|
| 영농조합 | 18<br>(26.87) | 13<br>(19.40) | 30<br>(44.78) | 6<br>(8.96)  | 67<br>(100.0) |
| 농업회사 | 8<br>(40.00)  | 2<br>(10.00)  | 8<br>(40.00)  | 2<br>(10.00) | 20<br>(100.0) |
| 합 계  | 26<br>(29.89) | 15<br>(17.24) | 38<br>(43.68) | 8<br>(9.20)  | 87<br>(100.0) |

- 따라서 농업법인 설립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으나(자유설립 원칙), 정책지원에 있어서는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해야 함. 또한 법인 설립에 대한 사전 및 사후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건실한 법인 설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농업법인의 설립을 위한 사전준비로서 다음 사항을 숙지하도록 제도하여야 함.
  - 경영여건, 경영목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법인 형태를 선택함.
  - 시설장비의 가동을 위한 경영규모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
  - 경영참여자의 자금조달 능력과 사업의 기대수익성 등에 대한 검토
  - 노동력과 기술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

-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장단기 사업계획을 실행가능하도록 세울 것
- 정부시책이나 법령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할 것
- 정책지원사업의 대상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보조금 수혜를 위한 법인 설립을 억제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함.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영농경력, 사업실적, 구성원의 자질, 자본(출자)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 정책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전 등기부상의 출자 및 자부담이 구성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시군에서 확인
  - 정책자금으로 지원되는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 공무원이 담당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함.
    - 자부담분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정산하도록 함.
    - 정책사업 자금 및 시설물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에 대한 회수조치를 강화

## 1.2. 부실 법인에 대한 조치

- 경영부실(도산)의 일반적 정의: 경영부실은 투자에 대한 실현보수율이 일반보수율(시장금리) 보다 현저히 혹은 장기에 걸쳐서 저위에 머무는 것을 의미함. 특히 수익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거나 평균적 투자자본에 대한 수익이 자본코스트 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함.
- 경영 부실화의 원인으로 경영계획의 실패, 계획과 실적과의 차이 증대, 연쇄부도 및 거래처의 경영악화, 노동자 및 기술자 확보의 실패, 관련업계 전체의 불황, 불량채권의 누적 등이 지적됨.
- 부실경영의 일반적 성격과 특징
  - 일반적으로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부실화율이 높음.

- 사업영역이나 시장이 협소할수록, 하청 가공형보다 자가 생산형의 경우에, 구입처가 집중될수록, 판매처는 분산될수록 부실경영의 확률이 높음.
- 상품의 라이프사이클은 발생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분류되는데, 이 중 성숙기와 쇠퇴기에 이룰수록 부실경영의 확률이 높음.
- 마케팅 분야에서 상품개발 능력 보다 구입 및 판매 능력과 같은 시장적응 능력이 약할수록 부실경영의 소지가 많음.
- 경영부실의 정성적 판단기준
  - 경영진의 내분이 존재하고 의사결정에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
  - 재고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크레임이 많은 경우(불량재고품의 누적)
  - 유희 노동력과 설비가 눈이 떨 경우(과잉설비의 문제점의 노출)
  - 종업원의 불평이 심한 경우(고용노동력의 낮은 근무의욕)
  - 외상매출금 회수의 곤란, 장기채권의 존재(대금회수의 결함)
  - 회계장부나 부기기장이 미비한 경우
- 회계 및 재무자료에 의한 부실경영의 판단기준
  - ① 수익성 지표
    - 이익율 지표가 낮음.
    - 영업외 비용이 높음.
    - 특별이익율, 특별손실율이 높음.
    - 매상원가 비율이 높음.
  - ② 생산성 지표
    - 투자설비 효율이 낮음.
    - 종업원 일인당 매상고, 자본집약도, 노동장비율이 낮음.
    - 설비이용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짐.
  - ③ 회전율 지표
    - 총자본 회전율, 매상채권 회전율, 원재료 회전율이 낮음.
    - 제품 회전율이 낮음.
    - 외상매입 회전율이 낮음.

표 6-7 법인경영이 부실화되는 이유

단위: 개소, %

| 구 분  | 설립동기가<br>불명확함 | 사업운영이<br>미숙함  | 보조금 수혜를<br>위한 개인사업 | 구성원간에<br>협력미흡함 | 기타           | 합계            |
|------|---------------|---------------|--------------------|----------------|--------------|---------------|
| 영농조합 | 25<br>(37.31) | 14<br>(20.90) | 16<br>(23.88)      | 8<br>(11.94)   | 4<br>(5.97)  | 67<br>(100.0) |
| 농업회사 | 3<br>(15.00)  | 3<br>(15.00)  | 6<br>(30.00)       | 5<br>(25.00)   | 3<br>(15.00) | 20<br>(100.0) |
| 합 계  | 28<br>(32.18) | 17<br>(19.54) | 22<br>(25.29)      | 13<br>(14.94)  | 7<br>(8.05)  | 87<br>(100.0) |

표 6-8 부실화된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단위: 개소, %

| 구 분  | 정부개입은<br>필요없다 | 정부의 적절한<br>개입, 추가지원 | 부실경영은<br>청산하여 해체 | 합계            |
|------|---------------|---------------------|------------------|---------------|
| 영농조합 | 2<br>(2.99)   | 38<br>(56.72)       | 27<br>(40.30)    | 67<br>(100.0) |
| 농업회사 | 3<br>(15.00)  | 12<br>(60.00)       | 5<br>(25.00)     | 20<br>(100.0) |
| 합 계  | 5<br>(5.75)   | 50<br>(55.47)       | 32<br>(36.78)    | 87<br>(100.0) |

표 6-9 영세법인 통폐합의 필요성

단위: 개소, %

| 구 분  | 필요하다          | 필요없다          | 합계            |
|------|---------------|---------------|---------------|
| 영농조합 | 53<br>(79.10) | 14<br>(20.90) | 67<br>(100.0) |
| 농업회사 | 9<br>(45.00)  | 11<br>(55.00) | 20<br>(100.0) |
| 합 계  | 62<br>(71.26) | 25<br>(28.74) | 87<br>(100.0) |

- 자율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강제적 수단으로 해산하게 할 수는 없으나, 유명무실하거나 부실화된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해산, 합병 또는 사업변경 등을 권장함으로써 건실한 경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법인이 스스로 해산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특히 세제 감면 유지)도 주어지지 않음.
- 농업법인의 해산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14조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업회사법인도 상법에 의하여 같은 규정이 적용됨.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법인의 해산 사유: 법인의 합병, 파산, 정족수 기타 정관에서 정한 사유발생시
-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으로 전환하여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에 대해서는 농업회사법인(1호법인)으로 법인 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호법인 제도는 개별농가의 경영주가 대표가 되어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서, 임원으로 사원이외의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나아가 후계자의 경영 승계를 원활하게 하는 장치가 됨.
- 특히 영세한 법인은 기업의 합병제도를 원용하여 규모화된 농업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음.
- 상법에서는 합병의 형태로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구분하며, 흡수합병이 신설합병에 비하여 정차가 간편하고 비용상에서도 유리함. 즉, 등기·등록절차의 준수와 등록세 부담, 신주발행·교부에 따른 비용부담, 행정관청의 인·허가 신규취득 등의 유리성이 있음.
- 합병의 효과로는 규모경제를 통한 경영능률 향상, 재무상태의 개선, 과당경쟁 해소, 지역농업에 대한 서비스 증진 등의 효과가 기대됨.
- 농업법인의 합병을 위한 제도적 장치(예: 협동조합합병촉진법)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업법인의 합병은 법인 스스로가 판단하여 합병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제도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 농업법인이 합병된 후에 기지원된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신설법인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

표 6-10 기업 및 협동조합 합병제도의 내용

| 구 분             | 기 업                                | 농업협동조합                            | 농업법인                                      |
|-----------------|------------------------------------|-----------------------------------|-------------------------------------------|
| 합 병<br>목 적      | - 경영능력의 향상<br>- 이윤극대화              | - 규모의 경제성 확보<br>- 조합원 서비스 향상      | - 규모의 경제성 확보<br>- 조합원 서비스 향상<br>- 경영수지 개선 |
| 합 병<br>주 체      | 일반 회사 및 법인                         | 단위농업협동조합                          | - 농업회사법인<br>- 농업조합법인                      |
| 법 적<br>기 초      | - 상법<br>- 증권거래법<br>- 독점규제법<br>- 세법 | 농업협동조합합병<br>촉진에 관한 법률             | 합병을 위한 법적<br>제도적 장치가 필요                   |
| 합 병<br>범 위      | 기능적·경영적·재무적<br>범위                  | 생활권·경제권범위                         | 기능적·품목적 범위                                |
| 추 진<br>기 구      | 주주총회                               | - 중앙회의 권고<br>- 조합원의 동의            | 전문적인 추진기구가<br>필요                          |
| 합병에<br>대한<br>지원 | 정부지원없음                             | - 대손채권 매각자금<br>지원<br>- 경영정상화자금 지원 | 정부지원이 필요                                  |

자료: 관련법률을 기초로 작성.

### 1.3. 협동조합과의 관계 정립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과의 경합은 가공 또는 구판매 등의 유통사업에서 나타나며, 단위조합은 보다는 전문조합에서 직접적인 사업영역의 경쟁관계가 성립되고 있음.
- 1994년 농협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전문조합(특수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품목별 조직체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기설립된 전문협동조합과 동일한 사업으로 경합을 벌이게 됨.
- 경남지역의 진영단감협동조합이 기설립되었으나, 1994년 밀양단감영농조합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9개 단감영농조합의 연합회를 구성함으로써 오히려 영농조합연합회가 단감유통을 주도하고 있음.
- 특정 품목의 유통형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군지역 또는 도단위로 조직되어 사업활동면에서 전문농협과 차이가 없음.

표 6-11 법인과 농협과의 결합 실태

단위: 개소, %

| 구 분  | 결합이 심함        | 다소 결합됨        | 문제 없음         | 합계            |
|------|---------------|---------------|---------------|---------------|
| 영농조합 | 14<br>(20.90) | 15<br>(22.39) | 38<br>(56.72) | 67<br>(100.0) |
| 농업회사 | 2<br>(10.00)  | 6<br>(30.00)  | 12<br>(60.00) | 20<br>(100.0) |
| 합 계  | 16<br>(18.39) | 21<br>(24.14) | 50<br>(57.47) | 87<br>(100.0) |

- 따라서 앞으로 설립되는 유통사업 중심의 영농조합에 대해서는 전문 협동조합으로 유도하고, 기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도 사업내용과 성격을 분류하여 협동조합과의 합병 내지는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①전문농협으로의 전환 유도

- 전문농협의 설립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전문농협으로 전환하여 중앙회의 회원농협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영농조합법인에 비해 전문농협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수준이 현재 매우 낮으므로 신규로 설립된 전문농협에 대해서는 영농조합법인 수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②전문농협과의 합병 유도

- 이미 전문농협이 관내에 있는 유통형의 영농조합은 전문농협과의 합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동조합합병촉진법(법률 5239호, '96.12.31)의 개정이 필요
  - 도단위로 전문농협이 설립된 품목을 대상으로 조직한 영농조합법인은 군단위의 영농조합법인을 도단위 전문농협의 군단위 지역조직으로 육성하는 것도 필요함.
- 영농조합의 과열설립을 억제하고 농협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협이 농업법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경제사업의 적극 추진 : 농업인의 농협에 대한 공통적인 불만은 농산물 마케팅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농협이 계

통출하를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인 유통사업에 나서야 함.

- 농업법인에 대한 조합원으로서의 참여동기 부여 : 농협은 농업법인을 일반농가와와는 다른 기업적 경영체로 구분하여 대응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철저한 경영지도를 수행해야 함.
- 지역생산 체제의 구축 : 농업법인이 지역농업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개별농가, 작목반, 농업법인 등을 연계하는 지역 농업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함.

### 3. 농업법인의 자구노력

- 농업법인이 본래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나, 오늘날의 농업은 과거와 같은 일차적인 생산만이 아닌 ‘생산→가공→판매→서비스’라는 일관경영 체계를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수직적 계열화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농업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지만, 계열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적절한 규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설립된 대부분의 농업법인은 출자자수에서조차 평균 6~7명 수준으로 취약하기 이룰데 없음. 물론 출자자 수가 많은 것이 경영 측면에서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많은 조합원을 확보하면서 구성원들이 가진 노동력, 자본, 기술, 경영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아가 사업 확장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분업화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생산자재·용역의 구매나 조달 단위, 생산물의 생산 단위 및 판매 단위, 자금 조달이나 관리 등의 재무 단위, 경영 관리의 단위 등이 각각 적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표 6-12 성공적인 농업법인이 되기 위한 요건

| 구 분              |             | 성공적인 농업법인의 요건                                                     |
|------------------|-------------|-------------------------------------------------------------------|
| 조                | 구성원 선정      | 참여동기, 영농기술, 영농규모, 노동력, 출자규모 등의 동질성 확보                             |
|                  | 대표자 자질      | 친화력, 통솔력, 판단력, 결단력, 경영관리 능력 등을 갖춘 덕망있는 사람을 선출                     |
|                  | 조직운영        |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총회의결사항 반드시 준수                                        |
| 사<br>업<br>추<br>진 | 구성원 불만조정    | 조직의 인화단결을 위해 구성원 단합을 중요시 하고, 조직에 불만이 있으면 상호양보 조정                  |
|                  | 입지조건        | 설립시 또는 신규사업 도입시 지역의 입지성을 면밀히 고려(생산기반, 기계화, 도시화, 노동수급, 교통망 등)      |
|                  | 사업선정        | 농기계와 시설, 구성원의 영농기술과 노동력, 지역여건, 자금조달능력을 고려하고 노동력과 시설장비를 연중 활용방안 모색 |
|                  | 사업추진        | 밀도 있는 계획과 추진력으로 체계적 사업추진                                          |
|                  | 사업평가 및 개선   | 사업계획, 사업추진과정, 사업결과 평가 등 각 단계별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구성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개선방안 도출    |
| 경<br>영<br>관<br>리 | 회계처리        | 법인체 수입지출 기장 및 결산이 체계화되어 경영성과의 진단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짐                      |
|                  | 비용절감        | 연간 작업면적 및 가동일수를 늘려 고정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소모적 지출 최대한 억제                   |
|                  | 투자의 적정화     | 농기계/시설의 도입시 적정규모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사후관리 철저                   |
|                  | 자산운용 및 수익배분 | 법인체 소유자산의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경영수익은 금후 투자계획 및 적립금을 우선 고려하고 공평하게 배분       |
| 기<br>타           | 기술습득        | 구성원의 신기술 습득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기술교육 등에 관심과 투자를 집중         |
|                  | 품질관리 및 홍보   | 생산물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소비자, 위탁자 등 고객에 대한 서비스 및 홍보                      |
|                  | 조직원의 사고방식   |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법인사업에 대한 의지와 자긍심이 강해야 함                          |

- 농업경영의 개선을 위해서는 부기 기장이 선결과제임. 그러나 1996년 전수조사에 의하면, 복식부기 기장이 8%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기장하지 않는 법인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경영에 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고 스스로 경영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함.
- 경영관리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어야 함. 우리나라의 농가(가족경영)은 아직도 가계와 경영, 경영자와 노동자 등이 분화되지 못한 상태이나, 농업법인은 종래의 농업경영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 수준의 경영관리가 요구됨.
- 법인경영이 정착될수록 경영규모 확대에 따른 투하자본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며, 그에 따른 경영재무의 관리수요가 증대하고, 또한 농산물의 판매 및 자재의 구매에 대한 거래량도 증가하게 됨. 따라서 생산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의미에서의 생산관리, 경영의 재무 및 자금운용을 건전화하기 위한 의미에서의 재무관리와 자금관리, 그리고 총괄관리에 해당하는 경영규모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 등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경영관리의 영역임.
- 이제부터는 농업을 경영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스스로 경영능력을 높여 나가며, 나아가 일반 농가에게도 혁신적인 경영관리 기법을 전파할 수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자가 되어야 할 것임.

## 부록: 농업법인 정책개선에 관한 의견조사표

### 1. 법인체명, 대표자명, 주소 등

|     |        |          |  |
|-----|--------|----------|--|
| 법인명 |        | 대표<br>자명 |  |
| 주 소 | (전화: ) |          |  |

### 2. 법인의 변동 상황을 적어 주십시오.

|             |            | 설 립 당 시 | 현 재 |
|-------------|------------|---------|-----|
| 구성원         | 출자자 수      | 명       | 명   |
|             | 상근종사자 수    | 명       | 명   |
| 자본금         | 총출자액       | 만원      | 만원  |
|             | 정부의 보조금    | 만원      | 만원  |
| 부 채         | 은행융자, 사채 등 | 만원      | 만원  |
|             | 정부의 융자금    | 만원      | 만원  |
| 연간순이익(소득총액) |            | 만원      | 만원  |

### 3. 법인을 설립한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 ) ①공동작업이나 농기계의 공동이용
- ( ) ②타인의 농사를 조직적으로 대행 작업
- ( ) ③농산물 생산의 협업을 통한 규모확대
- ( ) ④농산물의 공동출하 또는 판매장 운영
- ( ) ⑤가공사업 등을 통한 소득 증대
- ( ) ⑥기타( )

### 4. 위와 같은 설립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습니까?

- ( ) ①아주 만족한 수준
- ( ) ②대체로 달성
- ( ) ③거의 이루지 못하고 있다.

5. 귀 법인은 출자한 농가와 어떤 관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 ) ①개인 농사는 없이 법인의 사업과 통합하여 전업적으로 종사하는 형태이다.
- ( ) ②개인 농사는 따로 있으면서 법인의 사업에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형태이다.
- ( ) ③기타( )

6.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출자한 농가들이 얻게 된 가장 큰 이익은 무엇입니까?

- ( ) ①농업소득 증대
- ( ) ②임금 또는 부업소득 획득
- ( ) ③공동작업을 통한 여유있는 농업 실현
- ( ) ④기타( )

7. 그동안 법인 경영을 위한 사업자금은 어떻게 조달하셨습니까?

- ( ) ①주로 출자금에 의존
- ( ) ②주로 정부보조금에 의존
- ( ) ③비농민 출자를 활용
- ( ) ④사채나 금융기관을 이용
- ( ) ⑤기타( )

8. 귀 법인은 사업상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 편입니까?

- ( ) ①주로 대표자가 결정
- ( ) ②구성원의 합의로 결정
- ( ) ③두가지를 절충

9. 귀 법인은 별도의 건물이나 사무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 ( ) ①사무실을 빌려 쓴다.
- ( ) ②법인 소유의 건물이 있다.
- ( ) ③사무실이 따로 없다.

10. 귀 법인은 경영수지에 관한 부기나 장부를 기록하고 계십니까?

- ( ) ①기록하지 않는다.

- ( ) ②단식부기 장부를 쓴다.
- ( ) ③복식부기 장부를 쓴다.
11. 귀 법인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 ( ) ①현재의 사업을 유지
- ( ) ②사업규모를 축소할 계획
- ( ) ③사업규모를 확대할 계획
12. 귀 법인의 발전에 가장 크게 제약이 되고 있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 ) ①농지 부족
- ( ) ②자금 부족
- ( ) ③인력 부족
- ( ) ④경영관리 능력의 취약
- ( ) ⑤( )
13. 선생님께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법인 설립이 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그렇게 생각한다.
- ( ) ②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 ) ③모르겠다.
14. 최근에 법인경영체의 과열 현상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①현재 정도가 적당하다.
- ( ) ②너무 많이 설립되어 축소시켜야 한다.
- ( ) ③더 설립되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
- ( ) ④기타( )
15. 현재의 법인경영체에 대한 제도와 정책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①현재의 제도나 정책으로도 별 문제가 없다.
- ( ) ②설립은 자유롭게 하되 정책지원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

- ( )③설립부터 자격이나 조건을 규정하여 제한적으로 설립되도록 해야 한다.
- ( )④기타( )
16. 법인경영체에 대한 정책지원 대상자의 선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현재의 대상자 선정방법이 비교적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 ( )②법인에 대한 지원은 좋으나 대상자 선정의 절차와 자격이 너무 까다롭다.
- ( )③지원 법인의 선정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고 선정도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 )④기타( )
17. 법인 중에는 부실경영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설립 동기부터 불명확하기 때문
- ( )②사업의 운영이 미숙하기 때문
- ( )③보조금 수혜를 위한 개인사업이기 때문
- ( )④구성원간의 협력이 미흡하기 때문
- ( )⑤기타( )
18. 현재 부실화된 법인에 대하여 정부가 어떤 시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 )①법인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며 정부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
- ( )②정부가 적절히 지도감독하고 경영이 활성화되도록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 )③현재 실적이 없는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청산절차를 밟아서 해체시켜야 한다.
- ( )④기타( )
19. 지역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하는 영세한 법인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통합이 필요하다.

( )②통합이 필요하지 않다.

20. 귀 법인이 받은 정부의 융자금액에 대한 상환능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①현재의 경영 상태도 괜찮고 기간내 상환에 자신이 있다.

( )②지금까지는 비교적 괜찮지만 앞으로의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여 잘 모르겠다.

( )③현재는 어렵지만 점차 개선되어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

( )④현재도 어렵고 장래 전망도 불투명하며 적기에 상환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 )⑤기타( )

21. 귀 법인은 지역의 단위농협이나 전문농협과 사업상으로 어느 정도나 경합되고 있습니까?

( )①경합이 심하다.

( )②다소 경합된다.

( )③경합되는 문제는 없다.

22. 선생님께서는 우리 농촌의 실정에서 법인경영체가 어떻게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개별농가를 통합한 생산공동체로서 독립적인 사업으로 발전해야 한다.

( )②출자농가의 농사를 돕고 소득을 높이는 정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 )③출자한 농가를 포함하여 지역 전체의 농업의 발전에도 기여하여야 한다.

( )④기타( )

23. 농업법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 참 고 문 헌

- 구재서, “농업구조개선 시범사업으로서의 개척농장 육성에 관한 약간의 제안”, 『농촌경제』 5집, 1963.
- 김정호 외, 『전업농 육성과 영농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2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 김정호 외, 『영농조합법인의 실태와 육성방안』, 연구보고3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 김준오,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농협중앙회 조사부, 1995.
- , 『영농조합법인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 농협중앙회조사부, 1996.
- 박문호, 『농업회사법인의 유형별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6.
- 서기석, 『영농조합법인의 발전과정과 경영효율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7.
- 윤수종, 『한국 농업생산에서의 노동조직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0.
- 농림수산부, 『영농조합법인 업무편람』, 1995.
- 농수축산신문사, 『작목반의 현장』, 1993.
- 농촌진흥청, 『농업법인경영체 운영사례』, 1997.
- 농협중앙회, 『영농조합법인의 현황과 발전방향』(농협 창립 35주년 기념 심포지엄자료), 1996.6.
- 한국농어민신문사, 『농업법인화의 길』, 1995.
- 高橋正郎, 『日本農業の組織論的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73.
- 高橋信正, 『現代農業生産組織の展開論』, 明文書房, 1986.
- 吉田博, 『農業生産共同組織論』, 農林統計協會, 1980.

- 吉田忠編著、『地域農業と農業経営』, 明文書房, 1980.
- 大原興太郎,『稲作受託組織と農業経営』, 日本経済評論社, 1985.
- 稲本志良,『地域農業・農業経営と法人経営』, 京都府農業會議, 1992
- 富民協會・毎日新聞社,『農業と経済』(農業生産法人 特輯), 1993.6.
- 小倉武一編著,『集團營農の展開』, 御茶の水書房, 1976.
- 伊藤忠雄,『現代農業生産組織の経営論』, 農林統計協會, 1991.
- 全國農業改良普及協會,『農業生産組織の新たな展開方向』, 1988.
- 全國農業會議所,『農業法人の経営實務』, 1992.
- 全國農業會議所,『農業法人への挑戦』, 1993.
- 總合研究開發機構,『新しい農業経営形態の研究』, 1995.

정책연구보고 P24

##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

찍은날 1997. 9      펴낸날 1997. 9

발행인 박 상 우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962-7311~5)

□□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주)문 원 사 739-3911~5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